인체조직법(2004)

국 가 영국

원 법 률 명 Human Tissue Act 2004

제 정 2004.11.15 2004 c. 30

개 정 2020.02.06 SI 2020 No. 86

수 록 자 료 인체조직법(2004), pp.1-147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Human Tissue Act 2004

2004 CHAPTER 30

An Act to make provision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volving human tissue; to make provision about the transfer of human remains from certain museum collections; and for connected purposes. [15th November 2004]

BE IT ENACTED by the Queen'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PART 1 REMOVAL, STORAGE AND USE OF HUMAN ORGANS AND OTHER TISSUE FOR SCHEDULED PURPOSES

1 Authorisation of activities for scheduled purposes

- (1) The following activities shall be lawful if done with appropriate consent—
- (a) the storag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other than anatomical examination;
- (b) the us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a purpose so specified, other than anatomical examination;

인체조직법(2004)

2004년 법률 제30호

인체 조직을 이용한 활동과 관련된 규정, 특정 박물관 소장품 중 사람 유해를 이전하 는 것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목적을 위 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2004년 11 월 15일]

현 의회에 소집된 상원 및 하원 의원의 조 언과 동의를 받아 대영제국 여왕 폐하의 권 한으로 다음과 같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부 예정된 목적을 위한 인간의 장 기 및 그 밖의 조직의 제거, 저장 및 사용

제1조(예정된 목적을 위한 활동 승인)

- (1) 다음의 활동은 적절한 동의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적법하다.
- (a) 해부학 시험 외에 부칙 1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신체를 저장한다.
- (b) 해부학 시험 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망자의 신체를 사용한다.

- (c) the removal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 (d) the storage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t 1 of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 (e) the storage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t 2 of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 (f) the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t 1 of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 (g) the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t 2 of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 (2) The storag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shall be lawful if done—
- (a) with appropriate consent, and
- (b) after the signing of a certificate—
- (i) under section 22(1)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c. 20), or
- (ii) under Article 25(2) of the Births and

- (c) 부칙 1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신체로부터 신체를 구성하 거나 그에 포함된 관련 물질을 제거한다.
- (d) 부칙 1 제1부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저장한다.
- (e) 부칙 1 제2부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저장한다.
- (f)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부칙 1 제1부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한다.
- (g)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부칙 1 제2부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한다.
- (2) 해부학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할 사망 자의 신체를 저장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하다.
- (a) 적절한 동의를 받았다.
- (b) 해당인의 사망 과정에서 다음의 조항 에 따른 인증서에 서명한 후에 저장한다.
- (i)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법률 제20호) 제22조제(1)항
- (ii) 해당인의 사망 과정 중 「북아일랜드

Deaths Registra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76 (S.I. 1976/1041 (N.I. 14)),

of the cause of death of the person.

- (3) The us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shall be lawful if done—
- (a) with appropriate consent, and
- (b) after the death of the person has been registered—
- (i) under section 15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or
- (ii) under Article 21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76.
- (4) Subsections (1) to (3) do not apply to an activity of a kind mentioned there if it is done in relation to—
- (a) a body to which subsection (5) applies, or
- (b) relevant material to which subsection
- (6) applies.
- (5) This subsection applies to a body if—
- (a) it has been imported, or
- (b) it is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nd at least one hundred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출생 및 사망 등록령(1976)」(위임입법 제 1976/1041호(북아일랜드 제14호)) 제25조 제(2)항

- (3) 해부학 시험을 목적으로 사망자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법하다.
- (a) 적절한 동의를 받았다.
- (b) 해당인의 사망 후 다음 조항에 따라 등록하였다.
- (i)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법률 제20호) 제15조
- (ii) 「북아일랜드 출생 및 사망 등록령(1976)」 제21조
- (4) 제(1)항부터 제(3)항은 다음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에 언급된 종류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제(5)항이 적용되는 신체
- (b) 제(6)항이 적용되는 관련 물질
- (5) 이 항은 다음과 같은 신체에 적용된다.
- (a) 수입한 것이다.
- (b) 이 조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인의 사망일부터 최소 100년이 경과한사람의 신체이다.

person's death.

- (6) This subsection applies to relevant material if—
- (a) it has been imported,
- (b) it has come from a body which has been imported, or
- (c) it is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nd at least one hundred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 (7) Subsection (1)(d) does not apply to the storage of relevant material for us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if—
- (a) the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and
- (b) the research falls within subsection (9).
- (8) Subsection (1)(f) does not apply to the use of relevant material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if—
- (a) the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and
- (b) the research falls within subsection (9).

- (6) 이 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물질에 적용된다.
- (a) 수입한 것이다.
- (b) 수입된 신체에서 유래한다.
- (c) 이 조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인의 사망일부터 최소 100년이 경과한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이다.
- (7) 제(1)항제(d)호는 다음과 같이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한 관련 물질의 저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해당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연구가 제(9)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 (8) 제(1)항제(f)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 으로 한 관련 물질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 (a) 해당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연구가 제(9)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 (9) Research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 (a) it is ethically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 (b) it is to be, or is, carried out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 person carrying it out is not in possession, and not likely to come into possession, of information from which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can be identified.
- (9A) Subsection (1)(f) does not apply to the use of relevant material for the purpose of research where the use of the material requires consent under paragraph 6(1) or 12(1) of Schedule 3 to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use of human cells to create an embryo or a human admixed embryo) or would require such consent but for paragraphs 16 and 20 of that Schedule.
- (9B) Subsection (1)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 (a) transplantation activities done in Wales; or
- (b) transplantation activities done outside Wales in relation to relevant material that was removed from a human body in Wales.
- (10) The following activities shall be

- (9) 이 항에 해당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a)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윤리적으로 승인되었다.
- (b)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그 물질이 유래 한 사람의 신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보유할 가능성 이 없는 상황에서 수행할 예정이거나 그와 같이 수행한다.
- (9A) 제(1)항제(f)호는 해당 물질의 사용이 「인간 수정 및 발생학법(1990)」 부칙 3 제6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배아 또는 인간혼합배아 형성을 위한 인간 세포 사용)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같은 부칙 제16조나 제20조 외에 해당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을 위한 관련 물질의 사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9B) 제(1)항은 다음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웨일스에서 이루어진 이식활동
- (b) 웨일스 내의 인체에서 제거된 관련 물질과 관련하여 웨일스 외부에서 수행된 이식활동
- (10) 다음의 활동은 적법하다.

lawful—

- (a) the storage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t 2 of Schedule 1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e use for such a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c) an activity in relation to which subsection (4), (7), (8) or (9B)(b) has effect.
- (10A) In the case of an activity in relation to which subsection (8) has effect, subsection (10) (c) is to be read subject to any requirements imposed by Schedule 3 to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in relation to the activity.
- (1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 (a) vary or omit any of the purposes specified in Part 1 or 2 of Schedule 1, or
- (b) add to the purposes specified in Part 1 or 2 of that Schedule.
- (12) Nothing in this section applies to—
- (a) the use of relevant material in connection with a device to which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 vitro

- (a)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부칙 1 제2부에 명시된 목적을 위 하여 저장하는 것
- (b)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 런 물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c)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9B) 항제(b)호가 적용되는 활동
- (10A) 제(8)항이 적용되는 활동의 경우, 제(10)항제(c)호는 그 활동에 대하여 「인간 수정 및 발생학법(1990)」 부칙 3에서부과한 모든 요건에 따라 해석한다.
- (11) 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부칙 1 제1부나 제2부에 명시된 목적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 (b) 같은 부칙 제1부 또는 제2부에 명시된 목적에 추가한다.
- (12)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9/EC가 적용되는 장치 를 통한 관련 물질의 사용으로서 해당 사용

diagnostic medical devices applies, where the use falls within the Directive, or

- (b) the storage of relevant material for use falling within paragraph (a).
- (13) In this section, the references to a body or material which has been imported do not include a body or material which has been imported after having been exported with a view to its subsequently being re-imported.
- (14) In this section "transplantation activitie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which makes provision in relation to consent for transplantation activities done in Wales).

2 "Appropriate consent": children

- (1) This section makes provi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ppropriate consent" in section 1 in relation to an activity involving the body, or material from the body, of a person who is a child or has died a child ("the child concerned").
- (2) Subject to subsection (3), where the child concerned is alive, "appropriate consent" means his consent.
- (3) Where—
- (a) the child concerned is alive,
- (b) neither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to the activity, nor a decision of his not to

이 지침의 범위 내인 경우

- (b) 제(a)호에 속하는 사용을 위한 관련 물질의 저장
- (13) 이 조에서 수입된 신체나 물질에는 연이어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에 수 입한 신체나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14) 이 조에서 "이식활동"이란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해당 법은 웨일스에서 이루어진 이식활동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규정을 제 정한다)

제2조("적절한 동의", 아동)

- (1) 이 조는 아동 또는 사망한 아동("관련 아동")의 신체나 신체 유래 물질과 관련하여 제1조의 "적절한 동의"에 대한 해석을 규정한다.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관련 아동이 살아있는 경우 "적절한 동의"란 그 아동의 동의를 말한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다.
- (a) 관련 아동이 살아 있다.
- (b) 활동에 동의하기로 한 결정이나 동의

consent to it, is in force, and

(c) either he is not competent to deal with the issue of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or, though he is competent to deal with that issue, he fails to do so,

"appropriate consent" means the consent of a person who has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 (4) Where the child concerned has died and the activity is one to which subsection
- (5) applies, "appropriate consent" means his consent in writing.
- (5) This subsection applies to an activity involving storage for use, or use, for the purpose of—
- (a) public display, or
- (b)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activity is not excepted material, anatomical examination.
- (6) Consent in writ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is only valid if—
- (a) it is signed by the child concerned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or
- (b) it is signed at the direction of the child concerned, in his presence and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 (7) Where the child concerned has died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없다.

(c) 관련 아동이 활동과 관련하여 동의 문 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그 문제를 처리 할 능력이 있으나 처리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적절한 동의"란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말한다.

- (4) 관련 아동이 사망하였으며 해당 활동에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동의"란 서면 동의를 말한다.
- (5) 이 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 위한 저장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 (a) 공개 전시
- (b) 활동의 주제에서 물질이 제외되지 않는 경우 해부학 시험
- (6)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적어도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관련 아동이 서명한다.
- (b) 관련 아동이 출석하고 최소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의 출석 아래 관련 아동의 지시로 서명이 이루어진다.
- (7) 관련 아동이 사망하였으며 제(5)항이

and the activity is not one to which subsection (5) applies, "appropriate consent" means —

- (a) if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to the activity, 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to it, w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he died, his consent;
- (b) if paragraph (a) does not apply—
- (i) the consent of a person who had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or
- (ii) where no person had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the consent of a person who stood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him at that time.

3 "Appropriate consent": adults

- (1) This section makes provi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ppropriate consent" in section 1 in relation to an activity involving the body, or material from the body, of a person who is an adult or has died an adult ("the person concerned").
- (2) Where the person concerned is alive, "appropriate consent" means his consent.
- (3)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died and the activity is one to which subsection(4) applies, "appropriate consent" means his consent in writing.

적용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적절한 동의" 란 다음을 말한다.

- (a) 아동이 활동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해당 아동이 사 망하기 직전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 아동의 동의
- (b) 제(a)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동의
- (i) 해당 아동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동의
- (ii) 해당 아동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 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당시 해당 아동과 적격 관계이던 사람의 동의

제3조("적절한 동의", 성인)

- (1) 이 조는 성인 또는 사망한 성인("관련자")의 신체 또는 신체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제1조의 "적절한 동의"의 해석을 규정한다.
- (2) 관련자가 살아 있는 경우 "적절한 동의"는 그 사람의 동의를 말한다.
- (3) 관련자가 사망하였으며 그 활동에 제 (4)항이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동의"란 서 면 동의를 말한다.

- (4) This subsection applies to an activity involving storage for use, or use, for the purpose of—
- (a) public display, or
- (b)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activity is not excepted material, anatomical examination.
- (5) Consent in writ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3) is only valid if—
- (a) it is signed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 (b) it is signed at the dire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his presence and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or
- (c) it is contained in a will of the person concerne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 (i) section 9 of the Wills Act 1837 (c. 26), or
- (ii) Article 5 of the Wills and Administration Proceedings (Northern Ireland) Order 1994 (S.I. 1994/1899 (N.I. 13)).
- (6)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died and the activity is not one to which subsection (4) applies, "appropriate consent" means—

- (4) 이 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 위한 저장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 (a) 공개 전시
- (b) 활동의 주제에서 물질이 제외되지 않 는 경우 해부학 시험
- (5) 제(3)항의 목적을 위한 서면 동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적어도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그 관련자가 서명한다.
- (b) 적어도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관련자의 지시로 서명이 이루어진 다.
- (c) 다음 조항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관련 자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다.
- (i) 「유언법(1837)」(법률 제26호) 제9조
- 「북아일랜드 유언 및 행정절차령 (ii) (1994), (위임입법 제1994/1899호(북아일 랜드 제13호)) 제5조
- (6) 관련자가 사망하였고 활동이 제(4)항 이 적용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적절한 동 의"란 다음을 말한다.

(a) if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to the activity, 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to it, w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he died, his consent;

- (b) if—
- (i) paragraph (a) does not apply, and
- (ii) he has appointed a person or persons under section 4 to deal after his death with the issue of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consent given under the appointment;

- (c) if neither paragraph (a) nor paragraph
- (b) applies, the consent of a person who stood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 (7) Where the person concerned has appointed a person or persons under section 4 to deal after his death with the issue of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the appointment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6) if no one is able to give consent under it.
- (8) If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communicate with a person appointed under section 4 within the time available if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is to be acted on, he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7) as not able to give consent under the appointment in relation to it.

- (a) 해당인이 활동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인의 동의
- (b) 다음과 같은 경우 임명인의 동의
- (i) 제(a)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ii) 해당인이 제4조에 따라 자신의 사망후 해당 활동과 관련된 동의의 문제를 처리할 사람(들)을 지정하였다.
- (c) 제(a)호 및 제(b)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과 적격 관계이던 사람의 동의
- (7) 관련자가 제4조에 따라 자신의 사망후에 해당 활동과 관련된 동의의 문제를 처리할 특정인(들)을 임명하였으나 누구도 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임명은 무시한다.
- (8) 동의가 필요한 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시간 내에 제4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경우 해당인은 제(7)항의 목적을 위하여임명에 따른 동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취급한다.

(9) In subsection (6A)—

"excepted adult" means—

- (a) an adult who has died and who had not been ordinarily resident in Eng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dying, or
- (b) an adult who has died and who for a significant period before dying lacked capacit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ubsection (6)(ba);

"permitted material" means relevant material other than relevant material of a type specifi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10)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 of "excepted adult" in subsection (9) a significant period means a sufficiently long period as to lead a reasonable person to conclude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consent to be deemed to be given under subsection (6) (ba).

4 Nominated representatives

- (1) An adult may appoint one or more persons to represent him after his death in relation to cons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
- (2) A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may be general or limited to consent in relation to such one or more activities as may be

(9) 제(6a)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외되는 성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사망하였으며 사망 직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성인
- (b)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사망한 성인이 제(6)항제(ba)호의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허용된 물질"이란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 명시된 종류의 관련 물질이 아닌 관련 물질 을 말한다.

(10) 제(9)항에서 "제외된 성인"에 대한 정의의 목적상 상당한 기간이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제(6)항제(ba)호에 따라 동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대표자 추천)

- (1) 성인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의한 것과 관련하여 사망 후 자신을 대리할 특정 인을 1명 이상 임명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른 임명은 그 임명에 명시 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하거나 동의한 활동으로 제한할

specified in the appointment.

- (3) A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may be made orally or in writing.
- (4) An oral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is only valid if made in the presence of at least two witnesses present at the same time.
- (5) A writte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is only valid if—
- (a) it is signed by the person making it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 (b) it is signed at the direction of the person making it, in his presence and i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witness who attests the signature, or
- (c) it is contained in a will of the person making it, being a will which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 (i) section 9 of the Wills Act 1837 (c. 26), or
- (ii) Article 5 of the Wills and Administration Proceedings (Northern Ireland) Order 1994 (S.I. 1994/1899 (N.I. 13)).
- (6) Where a person appoints two or more persons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the same activity, they shall be regarded as appointed to act jointly and severally unless the appointment provides that they

수 있다.

- (3) 이 조에 따른 임명은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 이 조에 따른 구두 임명은 적어도 2명 의 증인이 현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유효하 다.
- (5) 이 조에 따른 임명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적어도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해당인이 서명한다.
- (b) 적어도 1명의 서명을 증명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서명하는 사람의 지시로 서명이 이루어진다.
- (c) 유언 작성자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유언이 다.
- (i) 「유언법(1837)」(법률 제26호) 제9조
- 「북아일랜드 유언 및 (ii)행정절차령 (1994), (위임입법 제1994/1899호(북아일 랜드 제13호)) 제5조
- (6)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2 명 이상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 시에 공동으 로 행위하도록 임명된 것이 아니면 연대하 여 행위하도록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are appointed to act jointly.

- (7) A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may be revoked at any time.
- (8) Subsections (3) to (5) apply to the revocation of a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as they apply to the making of such an appointment.
- (9) A person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may at any time renounce his appointment.
- (10) A person may not act under an appointment under this section if—
- (a) he is not an adult, or
- (b) he is of a description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 (11) Where an adult has appointed a person under section 8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to represent the adult after death in relation to consent for one or more transplantation activities, the adult is to be treated as also having appointed the person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those activities.

5 Prohibition of activities without consent etc.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without appropriate consent, he does an activity to which subsection (1), (2) or
 of section 1 applies, unless he

- (7) 이 조에 따른 임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8) 제(3)항부터 제(5)항은 그 임명에 적용된 바와 같이 이 조에 따른 임명의 취소에 적용한다.
- (9)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임명을 포기할 수 있다.
- (10) 해당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의 임명에 따라 행위할 수 없다.
- (a) 해당인이 성인이 아니다.
- (b) 해당인이 장관이 제정한 규정으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한 설명에 해당 하는 사람이다.
- (11) 성인이 하나 이상의 이식활동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사망 후 그 성인을 대리하 기 위하여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제8조에 따라 특정인을 임명한 경우 그 성 인은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특정인을 임명한 것으로 취급한다.

제5조(동의 없는 활동의 금지 등)

(1) 누구든지 적절한 동의 없이 제(1)항, 제(2)항 및 제1조제(3)항이 적용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인이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에

(2004) [

reasonably believes—

- (a) that he does the activity with appropriate consent, or
- (b) that what he does is not an activity to which the subsection applies.
- (2)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falsely represents to a person whom he knows or believes is going to, or may, do an activity to which subsection (1), (2) or (3) of section 1 applies—
- (i) that there is appropriate consent to the doing of the activity, or
- (ii) that the activity is not one to which the subsection applies, and
- (b) he knows that the representation is false or does not believe it to be true.
- (3) Subject to subsection (4),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when he does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2) applies, neither of the following has been signed in relation to the cause of death of the person concerned—
- (a) a certificate under section 22(1)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c. 20), and
- (b) a certificate under Article 25(2)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76 (S.I. 1976/1041 (N.I. 14)).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적절한 동의를 받아 활동한다.
- (b) 해당인의 활동이 그 항이 적용되는 활 동이 아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제1조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그와 같이 믿는 사 람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 진술을 한다.
- (i) 활동 수행에 대하여 적절한 동의가 있다.
- (ii) 활동이 해당 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아 니다.
- (b) 해당인은 그 표현이 거짓이거나 진실 로서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3) 제(4)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제(2)항이 적용되는 활동을 할 때, 관련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서명을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법률 제20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
- (b) 「북아일랜드 출생 및 사망 등록령 (1976)」(위임입법 제1976/1041호(북아일 랜드 제14호))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

- (4) Subsection (3) does not apply—
- (a) where the person reasonably believes—
- (i) that a certificate under either of those provisions has been signed in relation to the cause of death of the person concerned, or
- (ii) that what he does is not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2) applies, or
- (b) where the person comes into lawful possession of the body immediately after death and stores it prior to its removal to a place where anatomical examination is to take place.
- (5) Subject to subsection (6),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when he does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3) applies, the death of the person concerned has not been registered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 section 15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and
- (b) Article 21 of the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76.
- (6) Subsection (5)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reasonably believes—
- (a) that the death of the person concerned

- (4)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해당인이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
- (i) 해당 조항 중 하나에 따른 인증서가 관 련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서명되었다.
- (ii) 해당인의 활동은 제1조제(2)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아니다.
- (b) 해당인이 사망 직후 신체를 합법적으로 보유하였으며 제거하기 전에 해부학 시험이 이루어질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 (5) 제(6)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제(3)항이 적용되는 활동을 할 때, 다음 중 어느한 조항에 따라 관련자의 사망을 등록하지아니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법률 제20호) 제15조
- (b) 「북아일랜드 출생 및 사망 등록령 (1976)」 제21조
- (6) 제(5)항은 어떠한 자가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관련자의 사망이 해당 조항 중 하나에

has been registered under either of those provisions, or

- (b) that what he does is not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3) applies.
- (7)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8) In this section, "appropriate conse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

6 Activities involving material from adults who lack capacity to consent

- (1) Where—
- (a) an activity of a kind mentioned in section 1(1)(d) or (f) involves material from the body of a person who—
- (i) is an adult, and
- (ii)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the activity, and
- (b) neither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to the activity, nor a decision of his not to

따라 등록되었다.

- (b) 해당인의 활동은 제1조제(3)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아니다.
- (7) 이 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에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8) 이 조에서 "적절한 동의"란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제6조(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 의 해당 물질과 관련된 활동)

- (1) 다음과 같은 경우
- (a) 제1조제(1)항제(d)호 및 제(f)호에 언급된 종류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포함한다.
- (i) 성인이다.
- (ii) 활동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 (b) 활동에 동의하기로 한 결정이나 동의

consent to it, is in force,

ther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be deemed to be consent of his to the activity if it is done in circumstances of a kind specified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2)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transplantation activities done in Wales.

(For provision in these circumstances see section 9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7 Powers to dispense with need for consent

- (1) If the Authority is satisfied—
- (a) that relevant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not reasonably possible to trace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the material be u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donor, and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이 부의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규 정으로 지정한 종류의 상황에서 수행되는 경우 활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이 조는 웨일스에서 이루어진 이식활 동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상황에 대한 조항은 「웨일스 인간이식 법(2013)」 제9조를 참조한다)

제7조(동의가 필요 없는 분배 권한)

- (1) 다음과 같이 당국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관련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신체의 소유자("기증자")를 추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아니하다.
- (c) 기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료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 부합한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이 효력이

that purpose is in force, or

(iii) that the donor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t may direct that subsection (3) apply to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 (2) If the Authority is satisfied—
- (a) that relevant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the material be u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reasona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get the donor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or
- (iii) that the donor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and

있다.

- (i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 능력이 부족하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물 질에 제(3)항을 적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 (2) 다음과 같이 당국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관련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사람("기증자")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료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 부합한다.
- (c)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있다.
- (iii) 기증자가 해당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 능력이 부족하다.

(e) that the donor has been given notice of the application for the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this subsection,

it may direct that subsection (3) apply to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 (3) Where material is the subject of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1) or (2), ther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be deemed to be consent of the donor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him which may be relevant to the person for whose benefit the direction is given.
-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enable the High Court, in such circumstances as the regulations may provide, to make an order deeming ther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to be appropriate consent to an activity consisting of—
- (a) the storag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 (b) the us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that purpose,
- (c) the removal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that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 (e) 기증자가 이 항에서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요구하는 신청서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물 질에 제(3)항을 적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 (3) 물질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부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료적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지시가 내려진 사람에게 이익일 수 있는 목적을위하여 기증자의 동의로 간주한다.
- (4) 장관은 규정을 통하여 그 규정에서 정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이 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정할 수 있다.
- (a)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망자의 신체 저 장
- (b) 그 목적을 위한 사망자의 신체 사용
- (c) 그 목적을 위하여 사망자의 신체로부터 신체를 구성하거나 신체에 포함된 관련 물 질 제거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 (d) the storage for use for that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or
- (e) the use for that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8 Restriction of activities in relation to donated material

- (1) Subject to subsection (2),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he—
- (a) uses donated material for a purpose which is not a qualifying purpose, or
- (b) stores donated material for use for a purpose which is not a qualifying purpose.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reasonably believes that what he uses, or stores, is not donated material.
- (3)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d)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을 해당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장
- (e)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의 그 목적을 위한 사용

제8조(기증된 물질과 관련된 활동의 제한)

-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기증된 물질을 적격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다.
- (b) 적격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기증된 물질을 저장한다.
- (2) 제(1)항은 해당인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기증된 물질이 아니라고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이 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에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4) In subsection (1), references to a qualifying purpose are to—
- (a)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 (b) the purpose of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 (c) the purpose of decent disposal, or
- (d) a purpose specifi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 (5)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donated material are to—
- (a)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b)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which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donation.

(6)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5), a body, or material, is the subject of donation if authority under section 1(1) to (3) or section 3(1) to (3)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exists in relation to it.

9 Existing holdings

(1) In its application to the following activities, section 1(1) shall have effect with the omission of the words "if done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4) 제(1)항에서 적격 목적이란 다음을 말 한다.
- (a) 부칙 1에 명시된 목적
- (b) 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
- (c) 적정한 처분의 목적
- (d)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 명시된 목적
- (5) 이 조에서 기증된 물질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사망자의 신체
- (b) 인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기증의 대 상이거나 대상이었던 관련 물질
- (6) 제(5)항의 목적상, 신체나 물질은 그와 관련하여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제 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3조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권한이 존재하는 경 우 기증의 대상이 된다.

제9조(기존 보유물)

(1) 다음 활동에 대한 적용에서 제1조제 (1)항은 "적절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생략하여 적용한다.

(2004) [

with appropriate consent"—

- (a) the storage of an existing holding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 (b) the use of an existing holding for a purpose so specified.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existing holding is a body, or separated part of a body, in relation to which section 10(3) or (5) has effect.
- (3) Section 5(1) and (2) shall have effect as if the activities mentioned in subsection(1) were not activities to which section1(1) applies.
- (4) In this section, "existing holding" means—
- (a)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b)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held, immediately before the day on which section 1(1) comes into force,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10 Existing anatomical specimens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a person dies during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1.
- (2) Subsection (3) applies where—

- (a) 부칙 1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보유물의 저장
- (b) 명시된 목적을 위한 기존 보유물의 사용
- (2) 제(1)항은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보유물이 신체나 신체의 분리된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에 언급된 활동이 제1조제(1)항이 적용되는 활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 (4) 이 조에서 "기존 보유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사망자의 신체
- (b)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위의 물질은 제1조제(1)항 시행일 직전에 보유 중인 것으로서 부칙 1에 명시된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제10조(기존 해부학 시료)

- (1) 이 조는 제1조 시행 직전 3년 동안 사 망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
- (2)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 다.

- (a) before section 1 comes into force,authority is given under section 4(2) or(3) of the Anatomy Act 1984 (c. 14) forthe person's body to be used foranatomical examination, and
- (b) section 1 comes into force before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body is concluded.
- (3) During so much of the relevant period as falls after section 1 comes into force, that authority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 as appropriate consent in relation to—
- (a) the storage of the person's body, or separated parts of his body, for use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and
- (b) the use of his body, or separated parts of his body, for that purpose.
- (4) Subsection (5) applies where—
- (a) before section 1 comes into force, authority is given under section 6(2) or (3) of the Anatomy Act 1984 for possession of parts (or any specified parts) of the person's body to be held after anatomical examination of his body is concluded, and
- (b)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body is concluded—

- (a) 제1조가 시행되기 전에 「해부학법 (1984)」(법률 제14호) 제4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해부학 검사에 해당인의 신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다.
- (b) 해당인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 시험이 종결되기 전에 제1조가 시행된다.
- (3) 제1조가 시행된 이후에 속하는 관련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권한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다음 과 관련된 동의를 처리한다.
- (a) 해부학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신체 또는 신체의 분리된 부위의 저장
- (b) 그 목적을 위하여 해당인의 신체 또는 신체의 분리된 일부의 사용
- (4) 제(5)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 다.
- (a) 제1조가 시행되기 전에 「해부학법 (1984)」 제6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그 신체에 대한 해부학 시험을 종결한 이후에 해당인의 신체 일부(또는 지정된 부위)를 보유할 권한이 부여된다.
- (b) 해당인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 시험이 다음과 같다.

- (i) after section 1 comes into force, but
- (ii)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thre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 (5) With effect from the conclusion of the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body, that authority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 as appropriate consent in relation to—
- (a) the storage for use for a qualifying purpose of a part of the person's body which—
- (i) is a part to which that authority relates, and
- (ii) is such that the person cannot be recognised simply by examination of the part, and
- (b) the use for a qualifying purpose of such a part of the person's body.
- (6) Wher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 there would not be appropriate consent in relation to an activity but for authority given under the Anatomy Act 1984 (c. 14) being treated for those purposes as appropriate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section 1(1) to (3) do not authorise the doing of the activity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at authority.
- (7) In subsection (3), "the relevant

- (i) 제1조 시행 이후에 종결된다.
- (ii) 해당인의 사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결된다.
- (5) 해당인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 시험이 종결된 후, 같은 권한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다음과 관련된 동의를 처리한다.
- (a) 본인의 신체 일부가 다음과 같으며 적 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장
- (i) 그 권한이 관련되는 신체 일부이다.
- (ii) 단순히 그 신체 일부를 검사하여서는 해당인을 인식할 수 없다.
- (b) 해당인의 신체 일부의 적격 목적을 위한 사용
- (6)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해부학법 (1984)」(법률 제14호)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서 적절한 동의를 받은 목적을 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권한 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동의가 없는 경우, 제1조제(1) 항부터 제(3)항은 그 권한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 활동의 수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7) 제(3)항에서 "관련 기간"이란 어느 사

period", in relation to a person, means whichever is the shorter of—

- (a) the period of thre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and
- (b) the period beginning with that date and ending when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body is concluded.
- (8) In subsection (5), "qualifying purpose" means a purpose specified in paragraph 6 or 9 of Schedule 1.
- (9)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subsection (8).

11 Coroners

- (1) Nothing in this Part applies to anything done for purposes of functions of a coroner or under the authority of a coroner.
- (2) Where a person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 (a)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b)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is, or may be, required for purposes of functions of a coroner, he shall not act on authority under section 1 in relation to the body, or material,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coroner.

12 Interpretation of Part 1

In this Part, "excepted material" means

람과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

- (a) 그 사람의 사망일부터 3년의 기간
- (b) 그 사람의 사망일부터 그 신체에 대한 해부학 시험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 (8) 제(5)항에서 "적격 목적"이란 부칙 1 제6조 또는 제9조에 명시된 목적을 말한다.
- (9) 장관은 명령으로 제(8)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검시관)

- (1) 이 부는 검시관의 직무상 목적 또는 검시관의 권한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해당인이 다음과 같이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사망자의 신체이다.
- (b)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이다.
- 위 신체나 물질이 검시관의 직무상 목적으로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경우 그 신체나 물질에 대하여 제1조의 권한에 따라행위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시관의 동의를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1부의 해석)

이 부에서 "제외 물질"이란 다음과 같은 물

material which has-

- (a)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or
- (b)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use of the body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PART 2 REGULATION OF ACTIVITIES INVOLVING HUMAN TISSUE

The Human Tissue Authority

13 The Human Tissue Authority

- (1) There shall be a body corporate to be known as the Human Tissu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Authority").
- (2) Schedule 2 (which makes further provision about the Authority) has effect.

14 Remit

- (1) The following are the activities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 (a) the removal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 (b) the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질을 말한다.

- (a)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해부학 시험의 목적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사망자의 신체로부터 유래한다.

제2부 인체 조직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인체조직청

제13조(인체조직청)

- (1) 인체조직청이라는 명칭의 법인체를 설립한다(이 법에서 "당국"이라 한다)
- (2) 부칙 2(이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한다)가 적용된다.

제14조(소관)

- (1) 다음은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이다.
- (a)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를 구성하거나 신체에 포함된 관련 물질을 인체에서 제거하는 것
- (b) 예정된 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용
- (i) 사망자의 신체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 (c) the storage of an anatomical specimen or former anatomical specimen;
- (d) the storage (in any case not falling within paragraph (c))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e) the import or export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f) the disposal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which has been—
- (i) imported for use,
- (ii) stored for use, or
- (iii) used,

for a scheduled purpose;

(g) the disposal of relevant material which—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c) 해부학 시료 또는 이전의 해부학 시료 의 저장
- (d)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저장하는 것(제(c)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e)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 의 수입 및 수출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f)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망자 신체의 처분
- (i)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 (ii)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한다.
- (iii) 사용한다.
- (g) 다음과 같은 관련 물질의 폐기

- (i) has been removed from a person's body for the purposes of his medical treatment,
- (ii) has been removed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the purposes of an anatomical, or post-mortem, examination,
- (iii) has been removed from a human body (otherwise than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ii))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iv) has come from a human body and been imported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r
- (v) has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which has been imported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h) the procurement, processing, ... testing, storage, distribution, import or export of tissue or cells, in so far as those activities are activities to which regulation 7(1), (1A) or (2) of the 2007 Regulations applies and are not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by virtue of paragraphs (a) to (g).
- (i) the donation, testing, characterisation, procurement, preservation, transport, transplantation and disposal of human organs, in so far as those activities are activities to which regulation 5(1) of the 2012 Regulations applies and are not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by virtue of paragraphs (a) to (h).

- (i) 해당인의 치료를 위하여 사람의 신체에서 제거하였다.
- (ii) 해부학 시험이나 부검을 목적으로 사 망자의 신체에서 제거하였다.
- (iii)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체((ii)목에 언급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거하였다.
- (iv) 인체에서 유래한 것이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 (v) 예정된 목적을 위하여 수입된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h) 2007년 규정 제7조제(1)항, 제(1A)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활동이며 제(a)호 부터 제(b)호로 인하여 당국의 소관에 속 하지 않는 경우 조직 및 세포의 조달, 시 험, 처리, 저장, 유통, 수입 및 수출
- (i) 2012년 규정 제5조제(1)항이 적용되고 제(a)호부터 제(h)호에 따라 당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인 경우 인간 장기의 기증, 시험, 특성화, 조달, 보존, 운송, 이식 및 폐기

-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a) and (b), the activities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include, in particular—
- (a) the carrying-out of an anatomical examination, and
- (b) the making of a post-mortem examination.
- (2ZA) The activities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do not include the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relevant material where the use of the material requires consent under paragraph 6(1) or 12(1) of Schedule 3 to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use of human cells to create an embryo or a human admixed embryo) or would require such consent but for paragraphs 16 and 20 of that Schedule.
- (2A) Expressions used in paragraph (h) of subsection (1) and in the 2007 Regulations have the same meaning in that paragraph as in those Regulations; and the reference to activities to which regulation 7(1), (1A) or (2) of those Regulations applies is to be read subject to regulation 2(3) of those Regulations.
- (2B) Expressions used in paragraph (i) of subsection (1) and in the 2012 Regulations have the same meaning in that paragraph as in those Regulations.
- (3) An activity is excluded from the remit

- (2) 제(1)항제(a)호 및 제(b)호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해부학 시험의 수행
- (b) 부검 실시
- (2ZA)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은 「인간 수정 및 발생학법(1990)」 부칙 3 제6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배아 또는인간혼합배아 형성을 위한인간 세포 사용)에 따른동의가 필요한경우 또는같은부칙제16조나제20조외에해당동의가요구되는경우에는예정된목적을위한관련물질의사용을 포함하지아니한다.
- (2A) 제(1)항제(h)호와 2007년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해당 규정의 같은 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같은 규정 제7조제(1)항, 제(1A)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활동이란 해당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해석한다.
- (2B) 제(1)항제(i)호 및 2012년 규정에 사용된 표현은 해당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 (3) 활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국의 소관

of the Authority if-

- (a) it relates to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or to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such a person, and
- (b) at least one hundred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this section for the purpose of adding to the activities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 (5) In this section, "relevant material", in relation to use for the scheduled purpose of transplantation, does not include blood or anything derived from blood.

15 General functions

The Authority shall have the following general functions—

- (a) maintaining a statem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which it considers should be followed—
- (i) in the carrying-on of activities within its remit, and
- (ii) in the carrying—out of its functions in relation to such activities;
- (b) providing in relation to activities within its remit such general oversight and guidance as it considers appropriate;

에서 제외된다.

- (a) 이 조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신체 나 해당인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관련 이 있다.
- (b) 그 사람의 사망일부터 최소 100년이 경과하였다.
- (4) 장관은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활동에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를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 (5) 이 조에서 "관련 물질"은 예정된 이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혈액 또 는 혈액에서 유래한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일반 직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 한다.

- (a) 당국이 다음과 같은 활동의 수행에 수 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일반 원칙 에 대한 설명을 비치한다.
- (i) 소관에 속하는 활동의 수행
- (ii)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그 직무의 수행
- (b) 소관에 속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감독 및 지도 를 제공한다.

- (c) superintending, in relation to activities within its remit, compliance with—
- (i) requirements imposed by or under Part 1 or this Part or under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and
- (ii) codes of practice under this Act;
- (d) providing to the public, and to persons carrying on activities within its remit, such information and advice as it considers appropriate about the nature and purpose of such activities;
- (e) monitoring developments relating to activities within its remit and advising the Secretary of State, the Welsh Ministers and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on issues relating to such developments;
- (f) advising the Secretary of State, the Welsh Ministers or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on such other issues relating to activities within its remit as he, the Ministers or the department may require.

Licensing

16 Licence requirement

(1) No person shall do an activit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therwise than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gran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 (c) 소관에 속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준수를 감독한다.
- (i) 제1부 또는 이 부 또는 「웨일스 인간 이식법(2013)」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
- (ii) 이 법에 따른 실무규범
- (d) 대중이나 소관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활동의 성격과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한다.
- (e) 소관에 속하는 활동과 관련된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장관, 웨일스 장관 및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에 이러한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한다.
- (f) 해당 장관 또는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소관에 속하는 활동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하여 장관, 웨일스 장관 또 는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에 자문한다.

허가

제16조(허가 요건)

(1) 누구든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여 된 허가의 권한에 따른 활동을 제외하고 이 조가 적용되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 다.

- (2) This section applies to the following activities—
- (a) the carrying-out of an anatomical examination;
- (b) the making of a post-mortem examination;
- (c) the removal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an activity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of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ther than transplantation;
- (d) the storage of an anatomical specimen;
- (e) the storage (in any case not falling within paragraph (d))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f) the use,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 (2A)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 storage, distribution, import or export of

- (2) 이 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용된다.
- (a) 해부학 시험의 수행
- (b) 부검 실시
- (c) 사망자의 신체에서 그 신체를 구성하거나 그에 포함된 관련 물질을 이식 이외의목적을 위하여 제거(제(a)호 및 제(b)호에언급된 활동의 과정에서의 제거는 제외한다)
- (d) 해부학 시료의 저장
- (e)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 의 저장(제(d)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f) 공개 전시의 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용
- (i) 사망자의 신체
- (ii)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2A) 이 조는 해당 활동이 2007년 규정 제7조제(1)항, 제(1A)항 및 제(2)항이 적 용되는 활동인 경우 조직 및 세포의 조달,

tissue and cells ... in so far as those activities are activities to which regulation 7(1), (1A) or (2) of the 2007 Regulations applies.

- (2B) Expressions used in subsection (2A) and in the 2007 Regulations have the same meaning in that subsection as in those Regulations; and the reference to activities to which regulation 7(1), (1A) or (2) of those Regulations applies is to be read subject to regulation 2(3) of those Regulations.
-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specify circumstances in which storage of relevant material by a person who intends to use it for a scheduled purpose is excepted from subsection (2)(e)(ii).
- (4) An activity is excluded from subsection (2) if—
- (a) it relates to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or to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such a person, and
- (b) at least one hundred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amend this section for the purpose of—

시험, 처리, 저장, 유통, 수입 및 수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B) 제(2A)항 및 제2007년 규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해당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같은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A)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활동은 해당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해석한다.
- (3) 장관은 규정으로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제(2)항제(e)호(ii)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지정할 수 있다.
- (4)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2)항에서 제외된다.
- (a) 이 조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신체 나 해당인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관련 이 있다.
- (b) 그 사람의 사망일부터 최소 100년이 경과하였다.
- (5) 장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규정으로 이 조를 개정할 수 있다.

- (a) adding to the activitie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 (b) removing an activity from the activitie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r
- (c) altering the description of an activit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 (6) Schedule 3 (which makes provision about licence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has effect.
- (7) In subsection (2)—
- (a) references to storage do not include storage which is incidental to transportation, and
- (b) "relevant material", in relation to use for the scheduled purpose of transplantation, does not include blood or anything derived from blood.

17 Persons to whom licence applies

The authority conferred by a licence extends to—

- (a) the designated individual,
- (b) any person who is designated as a person to whom the licence applies by a notice given to the Authority by the designated individual, and
- (c) any person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 (a) 이 조가 적용되는 활동에 추가한다.
- (b) 이 조가 적용되는 활동에서 특정 활동을 삭제한다.
- (c) 이 조가 적용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변경한다.
- (6) 부칙 3(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허가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이 적용된다.
- (7)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저장에는 운송 중의 부수적 저장이 포 함되지 아니한다.
- (b) "관련 물질"은 예정된 이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혈액이나 혈액에서 유래한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허가가 적용되는 사람)

허가에서 부여한 권한은 다음으로 확장된다.

- (a) 지정된 개인
- (b) 지정된 개인이 당국에 통지하여 허가 가 적용되는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
- (c) 다음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

- (i)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 (ii) a person designated as mentioned in paragraph (b).

18 Duty of the designated individual

It shall be the duty of the individual designated in a licence as the person under whose supervision the licensed activity is authorised to be carried on to secure—

- (a) that the other persons to whom the licence applies are suitable persons to participate in the carrying—on of the licensed activity,
- (b) that suitable practices are us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that activity, and
- (c) that the conditions of the licence are complied with.

19 Right to reconsideration of licensing decisions

- (1) If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revocation or variation of a licence is refused, the applicant may require the Authority to reconsider the decision.
- (2) If a licence is—
- (a) revoked under paragraph 7(2) of Schedule 3, or
- (b) varied under paragraph 8(3) or (5) of that Schedule.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the designated

- (i) 지정된 개인
- (ii) 제(b)호에 언급된 지정된 사람

제18조(지정된 개인의 의무)

다음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수행하도록 승 인된 사람의 감독을 받는 것은 허가에 지정 된 개인의 의무이다.

- (a) 허가가 적용되는 다른 사람이 허가된 활동의 수행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다.
- (b) 적합한 관행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 (c)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제19조(허가결정에 대한 재검토 권리)

- (1) 허가의 부여, 취소 또는 변동에 대한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당국에 결정 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허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다.
- (a) 부칙 3 제7조제(2)항에 따라 취소되었다.
- (b) 같은 부칙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되었다.
- 이 경우 허가 보유자나 지정된 개인은 당국

individual, may require the Authority to reconsider the decision.

- (3) If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r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the purposes of an authorisation condition is refused, the applicant may require the Authority to reconsider the decision.
- (4) If permission for the purposes of an authorisation condition is revoked under paragraph 12(4)(b) of Schedule 3, any of—
- (a) the individual concerned,
- (b) the holder of the licence, and
- (c) the designated individual,

may require the Authority to reconsider the decision.

- (5) The right under subsection (1) or (2) is exercisable by giving the Authority notice of exercise of the right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28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concerned was given under paragraph 11 of Schedule 3.
- (6) The right under subsection (3) or (4) is exercisable by giving the Authority notice of exercise of the right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28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concerned was given under paragraph 12 of Schedule 3.

에 그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허가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허가의 부여 또는 취소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당국에 요구할 수있다.
- (4) 허가가 승인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부칙 3 제12조제(4)항제(b)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 대하여 취소된 경우 아래와 같다.
- (a) 관련 개인
- (b) 허가 보유자
- (c) 지정된 개인

위의 자는 당국에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제 11조에 따른 관련 결정 통지의 송달일부터 28일이 경과하기 전에 당국에 권리 행사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리는 제 12조에 따른 관련 결정 통지의 송달일부터 28일이 경과하기 전에 당국에 권리 행사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 (7) Subsections (1) to (4) do not apply to a decision on reconsideration.
- (8) In this section, "authorisation condition" means a condition of a licence where—
- (a) the licence is one to which paragraph 3 of Schedule 3 applies, and
- (b) the condition is the one required in the licence by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20 Appeals committees

- (1) The Authority shall maintain one or more committees to carry out its functions in pursuance of notices under section 19.
- (2) A committee under subsection (1)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n appeals committee.
- (3) An appeals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less than five members of the Authority.
- (4) The quorum for an appeals committee shall be three.

21 Procedure on reconsideration

- (1) Reconsideration shall be by way of fresh decision.
- (2) On reconsideration—
- (a) the person by whom reconsideration is required ("the appellant") shall be entitled

-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재검토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8) 이 조에서 "승인조건"이란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말한다.
- (a) 해당 허가는 부칙 3 제3조가 적용되는 허가이다.
- (b) 그 조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조건이다.

제20조(항소위원회)

- (1) 당국은 제19조의 통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유지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 부에서 항소위원회라 한다.
- (3) 항소위원회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항소위원회의 정족수는 3명으로 한다.

제21조(재검토 관련 절차)

- (1) 재검토는 새로운 결정을 통하여 실시한다.
- (2) 재검토는 다음과 같다.
- (a) 재검토가 필요한 사람("항소인")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항소위원회의 심리에 그

to require that he or his representative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ear before and be heard by the appeals committee dealing with the matter,

- (b) at any meeting at which such an opportunity is given, the person who made the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reconsideration shall be entitled to appear and be heard in person or by a representative, and
- (c) the appeals committee dealing with the matter shall consider any written representations received from the appellant or the person who made the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reconsideration.
- (3) The appeals committee by which a decision is reconsidered in pursuance of a notice under section 19 shall give the appellant notice of its decision.
- (4) If on reconsideration an appeals committee upholds the previous decision, the notice under subsection (3)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appeals committee's decision.
- (5) The Authority may by regulations make such other provision about procedure in relation to reconsideration as it thinks fit.
- (6) Where reconsideration of a decision—
- (a) is required under section 19(2) or (4)

대리인을 출두시킬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 (b) 해당 기회가 주어지는 회의에서, 재검 토 대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심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c) 이 문제를 다루는 항소위원회는 항소인 또는 재검토 대상인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부터 수령한 의견서를 고려한다.
- (3) 제19조의 통지에 따른 결정을 재검토하는 항소위원회는 항소인에게 그 결정에 대하여 통지한다.
- (4) 재검토에서 항소위원회가 종전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지에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 (5) 당국은 재검토 관련 절차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조항을 제정할 수있다.
- (6) 결정의 재검토는 다음과 같다.
- (a)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요

by only one of two persons by whom it could have been required, or

(b) is required under section 19(4) by only one or two of three persons by whom it could have been required,

it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s required by both or (as the case may be) all of them.

(7) In this section, "reconsideration" means reconsideration in pursuance of a notice under section 19.

22 Appeal on point of law

A person aggrieved by a decision on reconsideration in pursuance of a notice under section 19 may appeal to the High Court on a point of law.

23 Conduct of licensed activities

- (1) Directions may impose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the activity which a licence authorises to be carried on.
- (2) Directions under subsection (1) may be given in relation to licences generally, licences of a particular description or a particular licence.
- (3) A person shall comply with a requirement imposed by directions under subsection (1) if it is applicable to him.

24 Changes of licence circumstance

구되는 2명 중 1명이 요청한 경우

- (b) 제19조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3명 중 1명이나 2명만 요청한 경우
- 이 경우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둘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모두가 요구한 것으로 취 급한다.
- (7) 이 조에서 "재검토"란 제19조의 통지에 따른 재검토를 말한다.

제22조(법적 항소)

제19조의 통지에 따른 재검토 결정에 불복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3조(허가된 활동의 수행)

- (1) 지시를 통하여 허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시는 일반적인 허가, 특정 직군 허가 또는 특정 허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3) 누구든지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지 시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24조(허가 상황의 변경)

- (1) Directions may make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a situation arising in consequence of—
- (a) the variation of a licence, or
- (b) a licence ceasing to have effect.
- (2) Directions under subsection (1)(a) may impose requirements—
- (a) on the holder of the licence;
- (b) on a person who is the designated individual immediately before, or immediately after, the variation;
- (c) on any other person, if he consents.
- (3) Directions under subsection (1)(b) may impose requirements—
- (a) on the person who is the holder of the licence immediately before the licence ceases to have effect;
- (b) on the person who is the designated individual at that time;
- (c) on any other person, if he consents.
- (4) Directions under subsection (1) may, in particular, require anything kept, or information held, in pursuance of the licence to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 (5) Where a licence has ceased to have

- (1) 지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허가의 변경
- (b) 허가의 효력 중지
- (2) 제(1)항제(a)호에 따른 지시로 다음에 대하여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a) 허가 보유자
- (b) 변경 직전 또는 그 직후에 지정된 개 인인 사람
- (c)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사람
- (3) 제(1)항제(b)호의 지시로 다음에 대하 여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a) 허가가 효력을 발생하기 직전에 허가 보유자인 사람
- (b) 그 당시 지정된 개인인 사람
- (c)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사 람
- (4) 제(1)항에 따른 지시로 특히 지시에 따른 전달을 위하여 허가 수행 중의 보유물 이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5) 허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제로

effect by reason of the death or dissolution of its holder, anything subsequently done by a person before directions are given under subsection (1) shall, if the licence would have been authority for doing it, be treated as authorised by a licence.

25 Breach of licence requirement

- (1) A person who contravenes section 16(1) commits an offence, unless he reasonably believes—
- (a) that what he does is not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6 applies, or
- (b) that he acts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 (2)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Codes of practice

26 Preparation of codes

인하여 허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시가 발부되기 전에 해당인이 수행한 모든 행위는 허가가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허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처리된다.

제25조(허가요건 위반)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인이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해당인의 활동은 제16조가 적용되는 활동이 아니다.
- (b) 해당인이 허가의 권한에 따라 행위한다.
- (2)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에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실무규범

제26조(규범 수립)

- (1) The Authority may prepare and issue codes of practice for the purpose of—
- (a) giving practical guidance to persons carrying on activities within its remit, and
- (b) laying down the standards expected in relation to the carrying—on of such activities.
- (2) The Authority shall deal under subsection (1) with the following matters—
- (a) the carrying-out of anatomical examinations;
- (b) the storage of anatomical specimens;
- (c) the storage and disposal of former anatomical specimens;
- (d) the definition of death for the purposes of this Actand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e) communication with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relation to the making of a post-mortem examination;
- (f) the making of post-mortem
 examinations;
- (g) communication with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relation to the removal from the body of the deceased,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 (1) 당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무규범을 수립하고 공표할 수 있다.
- (a) 그 소관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지침을 제공한다.
- (b) 해당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준을 정한다.
- (2) 당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사항을 처리한다.
- (a) 해부학 시험의 수행
- (b) 해부학 시료의 저장
- (c) 종전 해부학 시료의 저장 및 폐기
- (d) 이 법과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의 목적을 위한 사망의 정의
- (e) 부검 실시와 관련하여 사망자 가족과 연락
- (f) 부검 실시
- (g) 사망자의 신체로부터 그 신체를 구성 하거나 그에 포함된 관련 물질을 예정된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것과 관 련하여 사망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 (h) the removal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any relevant material of which the body consists or which it contains;
- (i) the storage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and the use for such a purpose,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 (j) the storage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and the use for such a purpose, of an existing holding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
- (k) the import, and the export,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 (1) the disposal of relevant material which—
- (i) has been removed from a human body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r
- (ii) has come from a human body and is an existing holding for the purposes of section 9.
- (3) In dealing under subsection (1) with

- (h)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를 구성하거나 신체에 포함된 관련 물질을 인체에서 제거하는 것
- (i)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저장 및 해당 목적을 위한 사용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j) 제9조에서 의미하는 기존 보유물을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저장 및 그러한 목적으로의 사용
- (k)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 의 수입 및 수출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 (1) 다음과 같은 관련 물질의 폐기
- (i)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체 에서 제거한 물질
- (ii) 인체에서 유래한 것이며 제9조의 목적을 위한 기존 보유물
- (3) 제(2)항제(h)호와 제(i)호에 언급된 사

the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2)(h) and (i), the Authority shall, in particular, deal with consent(including consent for the purposes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4) The Authority shall—
- (a) keep any code of practice under this section under review, and
- (b) prepare a revised code of practice when appropriate.
- (5) Before preparing a code of practice under this section, the Authority shall—
- (a) consult such perso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 (b) if the code of practice relates to Wales, consult the Welsh Ministers, and
- (c) if the code of practice relates to Northern Ireland, consult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6) The Authority shall publish a code of practice issued under this section in such way as, in its opinion, is likely to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those interested.
- (7) A code of practice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such day as may be appointed by directions.
- (8) Codes of practice under this section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in relation to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안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국은 특히 동의를 처리하여야 한다(「웨 일스 인간이식법(2013)」의 목적을 위한 동의를 포함한다).

- (4) 당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이 조에 따른 실무규범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b) 적절한 경우 수정된 실무규범을 수립 한다.
- (5) 이 조에 따른 실무규범을 수립하기 전에 당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협의한다.
- (b) 실무규범이 웨일스와 관련 있는 경우 웨일스 장관과 협의한다.
- (c) 실무규범이 북아일랜드와 관련 있는 경우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와 협의한다.
- (6) 당국은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실무규범을 그 의견상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공표한다.
- (7)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실무규범은 지시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8) 이 조에 따른 실무규범으로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각각 다 른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respectively.

27 Provision with respect to consent

- (1) The duty under section 26(3) shall have effect, in particular, to require the Authority to lay down the standards expected in relation to the obtaining of consent where consent falls by virtue of to be obtained from a person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 (1A) Those provisions are—
- (a) section 2(7)(b)(ii) or 3(6)(c) of this Act;
- (b) section 4(3), 5(4), 6(3) or 7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standards required to be laid down by subsection (1) shall include provision to the effect set out in subsections (4) to (8).
- (3) The standards required to be laid down by subsection (1) may include provision to different effect in relation to cases which appear to the Authority to be exceptional.
- (4) The qualifying relationships for the purpose of should be ranked in the following order—
- (a) spouse, civil partner or partner;

제27조(동의 관련 조항)

-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의무는 특히, 적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아 야 하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획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준을 정하도록 당국에 요구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1A)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a) 이 법 제2조제(7)항제(b)호(ii)목 또는 제3조제(6)항제(c)호
- (b)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제4조제 (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제(4)항부터 제(8)항에 명시된 내용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 (3) 제(1)항으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는 당국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대한 다른 효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수 있다.
- (4) 목적의 적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 (a) 배우자, 혼인관계자(동성 결혼을 포함

- (b) parent or child;
- (c) brother or sister;
- (d) grandparent or grandchild;
- (e) child of a person falling within paragraph (c);
- (f) stepfather or stepmother;
- (g) half-brother or half-sister;
- (h) friend of longstanding.
- (5) Relationships in the same paragraph of subsection (4) should be accorded equal ranking.
- (6) Consent should be obtained from the person whose relationship to the person concerned is accorded the highest ranking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4) and (5).
- (7) If the relationship of each of two or more persons to the person concerned is accorded equal highest ranking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4) and (5), it is sufficient to obtain the consent of any of them.
- (8) In applying the principles set out above, a person's relationship shall be left out of account if—
- (a) he does not wish to deal with the issue

한다) 또는 동반자

- (b) 부모와 자녀
- (c) 형제자매
- (d) 조부모 또는 손자
- (e) 제(c)호에 속하는 사람의 자녀
- (f) 의붓 아버지 또는 의붓 어머니
- (g) 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
- (h) 오랜 친구
- (5) 제(4)항의 관계에는 동등한 순위를 부여한다.
- (6) 동의는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 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 (7) 2명 이상의 사람이 각각 관련자와 관계가 있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등한 최고 순위가 부여된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 (8) 위에 명시된 원칙을 적용할 때, 사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 다.
- (a) 해당인이 동의의 처리를 원하지 아니한

of consent,

- (b) he is not able to deal with that issue, or
- (c) having regard to the activity in relation to which consent is sought,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communicate with him within the time available if consent in relation to the activity is to be acted on.
- (8ZA) The duty under section 26(3) shall also have effect, in particular, to require the Authority to give practical guidance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person concerned is to be deemed to have consented under section 3(6)(ba).
- (8ZB) In giving practical guidance by virtue of subsection (8ZA), the Authority must, in particular, give guidance abou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f the type described in section 3(6B) by a person who stood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the person concerned immediately before death.
- (8A) The duty under section 26(3) shall also have effect, in particular, to require the Authority to give practical guidance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nsent is deemed under section 4 (consent of adults that are not excepted)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8B) In giving practical guidance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nsent is deemed

다.

- (b) 해당인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 (c) 동의가 필요한 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시간 내에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8ZA) 제26조제(3)항에 따른 의무는 특히, 관련자가 제3조제(6)항(ba)호에 따라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관한 실무지침 을 제공하도록 당국에 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8ZB) 제(8ZA)항에 따른 실무지침 제공시, 당국은 특히 사망 직전에 관련자와 적격 관계이던 사람이 제3조제(6B)항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8A) 제26조제(3)항에 따른 의무는 특히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제4조(제외되지 않은 성인의 동의)에 따라 동의가 간주되는 상황에 대하여 실무지침을 제공하도록 당국에 요구하는 데 효력을 발생한다.
- (8B) 동의로 간주되는 상황에 관한 실무지 침을 제공하면서, 당국은 특히 사망자의 친

(2004) [

the authority must, in particular, give guidance on how a relative or friend of long standing of the deceased can object on the basis of the deceased's wishes.

- (9)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subsection (4), except in so far as it applies to section 4(3), 5(4), 6(3) or 7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10) The Welsh Ministers may by order amend subsection (4) in so far as it applies to section 4(3), 5(4), 6(3) or 7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11) Before making an order under subsection (10) the Welsh Ministers must carry out such public consultation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28 Effect of codes

- (1) A failure on the part of any person to observe any provision of a code of practice under section 26 shall not of itself render the person liable to any proceedings.
- (2) The Authority may, in carrying out its functions with respect to licences, take into account any relevant observance of, or failure to observe, a code of practice under section 26, so far as dealing with a matter mention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and (e) to (j) of subsection (2) of that section.

척이나 오랜 친구가 사망자의 희망에 근거 하여 반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9) 장관은 명령으로 제(4)항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명령이 「웨일스 인간이식법(2013)」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웨일스 장관은 「웨일스 인간이식법
 (2013)」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제(4)항을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 (11) 제(10)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웨일스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공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규범의 효과)

- (1) 제26조에 따른 실무규범의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체로 어느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당국은 허가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26조제(2)항제(a)호부터 제(c)호, 제(e)호부터 제(j)호에 언급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실무규범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를 고려할 수 있다.

29 Approval of codes

- (1) The Authority may not issue a code of practice under section 26 that deals with a matter mention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and (e) to (j) of subsection (2) of that section unless—
- (a) a draft of it has been sent to and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laid by him before both Houses of Parliament, and
- (b) the 40-day period has elapsed without either House resolving not to approve the draft.
- (1A) Where a code of practice to which subsection (1) applies deals with a matter relating to the carrying on in Wales of a transplantation activ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the Authority may not issue the code unless—
- (a) a draft of it has been sent to and approved by the Welsh Ministers and laid by them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 (b) the National Assembly has approved the draft by resolution.
- (2) Before approving a draft code of practice sent to him under subsection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 (a) if the code relates to Wales, consult

제29조(규범 승인)

- (1) 당국은 다음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제 (a)호부터 제(c)호 및 제(e)호부터 제(j)호 및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다루는 제26 조에 따른 실무규범을 발행할 수 없다.
- (a) 그 초안을 장관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장관이 양원에 제출하였다.
- (b) 초안을 승인하지 않는 결의 없이 40일 이 경과하였다.
- (1A) 제(1)항이 적용되는 실무규범이 웨일스에서의 이식활동(「웨일스 인간이식법(2013)」에서 의미하는 활동을 말한다)수행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적용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당국은 그 실무규범을 발행할 수 없다.
- (a) 그 초안을 웨일스 장관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고 장관이 의회에 제출하였다.
- (b) 의회가 결의로 초안을 승인하였다.
- (2)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실무규범 초안을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해당 규범이 웨일스와 관련된 경우 웨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nd

- (b) if the code relates to Northern Ireland, consult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3) If the Secretary of State approves a draft code of practice sent to him under subsection (1)—
- (a) if the code relates to Wales, he shall send a copy of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 (b) if the code relates to Northern Ireland, he shall send a copy of it to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4) If the Secretary of State does not approve a draft sent to him under subsection (1), he shall give reasons to the Authority.
- (4A) If the Welsh Ministers do not approve a draft sent to them under subsection (1A), they shall give reasons to the Authority.
- (5)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shall lay before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ny document which it receives under subsection (3)(b).
- (6) In subsection (1)(b), "40-day period", in relation to the draft of a code of practice, means—
- (a) if the draft is laid before one House on a day later than the day on which it is laid

일스 의회와 협의한다.

- (b) 규범이 북아일랜드와 관련 있는 경우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와 협의한다.
- (3)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령한 실무규범 초안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다.
- (a) 규범이 웨일스와 관련된 경우 장관은 그 사본을 웨일스 의회에 전달한다.
- (b) 규범이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경우 장 관은 그 사본을 북아일랜드 부서에 전달한 다.
- (4)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령한 초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국에 이유를 제시한 다.
- (4A) 웨일스 장관은 제(1A)항에 따라 수 령한 초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국에 그 이유를 제시한다.
- (5)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는 제(3)항제(b) 호에 따라 수령한 모든 문서를 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한다.
- (6) 제(1)항제(b)호 중 "40일의 기간"이란 실무규범의 초안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 다.
- (a) 초안이 상원과 하원에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날 제출되는 경우, 나중의 날부터

before the other House, the period of 40 days beginning with the later of the two days, and

(b) in any other case, the period of 40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draft is laid before each House.

no account being taken of any period during which Parliament is dissolved or prorogued or during which both Houses are adjourned for more than 4 days.

Anatomy

30 Possession of anatomical specimens away from licensed premises

- (1) Subject to subsections (2) to (6),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has possession of an anatomical specimen, and
- (b) the specimen is not on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n anatomy licence is in force.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 (a) the specimen has come from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storage licence is in force, and
- (b) the person—
- (i) i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40일의 기간

(b) 그 밖의 경우, 초안이 상원과 하원 각 각에 제출된 날부터 40일의 기간

의회의 해산, 폐회 기간 또는 양원이 4일 이상 휴회하는 기간에는 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해부학

제30조(허가된 건물에서 떨어진 해부학 시료의 보유)

- (1) 제(2)항부터 제(6)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해부학 시료를 보유하고 있다.
- (b) 시료는 해부학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 있지 아니하다.
- (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 (a) 시료는 저장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서 반출한 것이다.
- (b) 해당인이 다음과 같다.
- (i) 지정된 개인이 시료를 보유하도록 서면

designated individual to have possession of the specimen, and

- (ii)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only for a purpose for which he is so authorised to have possession of it.
-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 (a) the specimen is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which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 (b) the person who has possession of the body has come into lawful possession of it immediately after the deceased's death, and
- (c) he retains possession of the body prior to its removal to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n anatomy licence is in force.
- (4)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only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it to premises—
- (a) in respect of which an anatomy licence is in force, or
- (b) where the specimen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 (5)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for purposes of functions of, or under the

으로 승인하였다.

- (ii) 시료를 보유하도록 승인된 목적으로만 그 시료를 보유한다.
- (3)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 (a) 시료는 해부학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될 사망자의 신체이다.
- (b) 시신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자가 사망 한 직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c) 해당인이 해부학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서 제거하기 전에 신체를 계속 보유한다.
- (4) 제(1)항은 어떠한 자가 다음과 같이 구내로 운반할 목적으로만 그 시료를 보유 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해부학 허가의 시행과 관련된 경우
- (b) 시료가 교육, 훈련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5) 제(1)항은 검시관의 직무상 목적 또는 그 권한으로 시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authority of, a coroner.

- (6)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reasonably believes—
- (a) that what he has possession of is not an anatomical specimen,
- (b) that the specimen is on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n anatomy licence is in force, or
- (c) that any of subsections (2) to (5) applies.
- (7)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8) In this section—
- "anatomy licence" means a licence authorising—
- (a) the carrying-out of an anatomical examination, or

- (6) 제(1)항은 어떠한 자가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해당인이 소유한 것은 해부학 시료가 아니다.
- (b) 시료가 해부학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 있다.
- (c) 제(2)항부터 제(5)항이 적용된다.
- (7)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에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8)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해부학 허가"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 하는 허가를 말한다.
- (a) 해부학 시험의 수행

(b) the storage of anatomical specimens;

"storage licence" means a licence authorising the storage of anatomical specimens.

31 Possession of former anatomical specimens away from licensed premises

- (1) Subject to subsections (2) to (5),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has possession of a former anatomical specimen, and
- (b) the specimen is not on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storage licence is in force.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 (a) the specimen has come from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storage licence is in force, and
- (b) the person—
- (i) i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designated individual to have possession of the specimen, and
- (ii)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only for a purpose for which he is so authorised to have possession of it.
-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only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it to

(b) 해부학 시료의 저장

"보관 허가"란 해부학 시료의 저장을 승인 하는 허가를 말한다.

제31조(허가된 건물에서 떨어진 종전 해부 학 시료 보유)

- (1) 제(2)항부터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종전의 해부학 시료를 보유하고 있다.
- (b) 시료는 저장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 있지 아니하다.
- (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 (a) 시료는 저장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서 반출한 것이다.
- (b) 해당인이 다음과 같다.
- (i) 지정된 개인이 시료를 보유하도록 서면 으로 승인한다.
- (ii) 시료를 보유하도록 승인된 목적으로만 그 시료를 보유한다.
- (3) 제(1)항은 어떠한 자가 다음과 같은 구내로 운반할 목적으로만 그 시료를 보유

premises-

- (a) in respect of which a storage licence is in force, or
- (b) where the specimen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 (4)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has possession of the specimen—
- (a) only for the purpose of its decent disposal, or
- (b) for purposes of functions of, or under the authority of, a coroner.
- (5)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reasonably believes—
- (a) that what he has possession of is not a former anatomical specimen,
- (b) that the specimen is on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storage licence is in force, or
- (c) that any of subsections (2) to (4) applies.
- (6)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저장 허가의 시행과 관련된 경우
- (b) 시료가 교육, 훈련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4) 제(1)항은 어떠한 자가 다음과 같은 시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적정한 처분의 목적을 위하여만 보유한다.
- (b) 검시관의 직무상 목적 또는 그 권한에 따라 보유한다.
- (5) 제(1)항은 어떠한 자가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해당인이 소유한 것은 종전의 해부학 시료가 아니다.
- (b) 시료가 저장 허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내에 있다.
- (c) 제(2)항부터 제(4)항이 적용된다.
- (6)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에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7) In this section, "storage licence" means a licence authorising the storage, for use for a scheduled purpose, of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Trafficking

32 Prohibition of commercial dealings in human material for transplantation

-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he—
- (a) gives or receives a reward for the supply of, or for an offer to supply, any controlled material;
- (b) seeks to find a person willing to supply any controlled material for reward;
- (c) offers to supply any controlled material for reward;
- (d) initiates or negotiates any arrangement involving the giving of a reward for the supply of, or for an offer to supply, any controlled material;
- (e) takes part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body of persons corporate or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7) 이 조에서 "보관 허가"란 인체에서 유 래한 관련 물질을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한 저장을 승인하는 허가를 말한다.

운송

제32조(이식을 위한 인간 물질의 상업적 거래 금지)

- (1) 다음의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 (a) 관리 대상 물질의 공급 또는 공급 제안 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받는다.
- (b) 보상을 위하여 관리 대상 물질을 기꺼이 공급하고자 하는 특정인을 찾으려 한다.
- (c) 보상으로 관리 대상 물질을 제공한다.
- (d) 관리 대상 물질의 공급에 대한 보상 제공 또는 공급 제안에 대한 보상 제공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개시하거나 협상한다.
- (e) 그 활동이 해당 계약의 개시나 협상을 구성하거나 개시나 협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unincorporate whose activities consist of or include the initiation or negotiation of such arrangements.

- (2) Without prejudice to subsection (1)(b) and (c),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he causes to be published or distributed, or knowingly publishes or distributes, an advertisement—
- (a) inviting persons to supply, or offering to supply, any controlled material for reward, or
- (b) indicating that the advertiser is willing to initiate or negotiate any such arrangement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d).
- (3)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ivity to which subsection (1) or (2) applies does not commit an offence under that subsection if he is designated by the Authority as a person who may lawfully engage in the activity.
- (3A) The Authority may not designate a person under subsection (3) if doing so could result in the United Kingdom being in breach of—
- (a) Article 12 of Directive 2004/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or

법인체나 비법인단체의 경영 또는 관리에 참여한다.

- (2) 제(1)항제(b)호 및 제(c)호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공표, 배포되게 하거나 고의로 공표, 배포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 (a) 보상을 위하여 관리 대상 물질을 공급 하거나 공급하도록 특정인을 유인한다.
- (b) 광고주가 제(1)항제(d)호에 언급된 계약을 개시하거나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은 당국이 그 활동에 법적으로 관여하도록 지정한 사람인 경우 같은항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A) 당국은 제(3)항에 따라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영국에서 다음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임명을 할 수 없다.
- (a) 인체 조직 및 세포의 기증, 조달, 시험, 처리, 보존, 저장 및 유통 시 품질 및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 침 2004/23/EC 제12조

- (b) Article 13 of Directive 2010/53/ 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of human organs intended for transplantation.
- (4)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or
- (ii)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 (iii) to both;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5)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2) shall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 (a)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1 weeks, or
- (b)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 (c) to both.

- (b) 이식용 인간 장기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53/EU 제13조
- (4)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5) 제(2)항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약식판결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51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b) 표준 등급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c) 징역과 벅금옥 병과하다

- (6)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1) and (2), payment in money or money's worth to the holder of a licence shall be treated as not being a reward where—
- (a) it is in consideration for transporting, removing, preparing, preserving or storing controlled material. and
- (b) its receipt by the holder of the licence is not expressly prohibited by the terms of the licence.
- (7) References in subsections (1) and (2) to reward,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any controlled material, do not include payment in money or money's worth for defraying or reimbursing—
- (a) any expenses incurred in, or in connection with, transporting, removing, preparing, preserving or storing the material,
- (b) any liability incurred in respect of—
- (i) expenses incurred by a third party in, or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activitie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 (ii) a payment in relation to which subsection (6) has effect, or
- (c) any expenses or loss of earnings incurred by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comes so far as reasonably and directly attributable to his supplying the material from his body.

- (6)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허가 보유자에게 금전이나 금전 대가물을 지불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보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 (a) 관리 대상 물질을 운반, 제거, 준비, 보존 또는 저장을 고려 중이다.
- (b) 허가 보유자의 수령이 허가조건에 의 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다.
- (7)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 대상 물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상환을 위한 금전이나 금전 대가물의 지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물질을 운송, 제거, 준비, 보존 또는 저 장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
- (b)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
- (i) 제(a)호에 언급된 활동 중 또는 그 활 동과 관련하여 제3자가 발생시킨 비용
- (ii) 제(6)항이 적용되는 지불
- (c) 해당인의 신체에서 유래한 그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그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자 에게 발생한 비용 또는 소득 상실

- (8)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ntrolled material is any material which—
- (a) consists of or includes human cells,
- (b) is, or is intended to be removed, from a human body,
- (c) is intend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and
- (d) is not of a kind excepted under subsection (9).
- (9) The following kinds of material are excepted—
- (a) gametes,
- (b) embryos, and
- (c) material which is the subject of property because of an application of human skill.
- (10) Where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is intended to be used to provide material which—
- (a) consists of or includes human cells, and
- (b) is not of a kind excepted under subsection (9).

for use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the body shall be treated as controlled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 (8) 이 조의 목적상, 관리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말한다.
- (a)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한 다.
- (b) 인체에서 제거되거나 제거가 예정된 것이다.
- (c) 이식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 (d) 제(9)항에 따라 제외된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 (9)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질은 제외된다.
- (a) 생식세포
- (b) 배아
- (c) 인간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자산의 대상이 된 물질
- (10) 사망자의 신체가 이식 목적의 다음과 같은 물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아 래와 같다.
- (a)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한 다.
- (b) 제(9)항에 따라 제외된 종류가 아니다.
- 이 경우 그 신체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 대상 물질로 취급한다.

(11) In this section—

"advertisement" includes any form of advertising whether to the public generally, to any section of the public or individually to selected persons;

"reward" means any description of financial or other material advantage.

Transplants

33 Restriction on transplants involving a live donor

- (1) Subject to subsections (3) and (5),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removes any transplantable material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intending that the material be used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and
- (b) when he removes the material, he knows, or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that the person from whose body he removes the material is alive.
- (2) Subject to subsections (3) and (5),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uses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any transplantable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and
- (b) when he does so, he knows, or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that the

(1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고"란 일반 대중, 대중의 특정 계층 또는 선택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

"보상"이란 금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 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이식

제33조(살아있는 기증자와 관련된 이식 제한)

- (1) 제(3)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이식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의도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이식 가 능 물질을 제거한다.
- (b) 물질을 제거할 때, 해당인은 물질을 제 거당하는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 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 다.
- (2) 제(3)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 래한 이식 가능 물질을 이식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한다.
- (b) 해당인이 그와 같이 행위할 때, 이식 가능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

transplantable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provide that subsection (1) or
- (2) shall not apply in a case where—
- (a) the Authority is satisfied—
- (i) that no reward has been or is to be given in contravention of section 32, and
- (ii) that such other condition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are satisfied, and
- (b) such other requirement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are complied with.
- (4) Regulations under subsection (3) shall include provision for decisions of the Authority in relation to matters which fall to be decided by it under the regulations to be subject, in such circumstances as the regulations may provide, to re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the regulations may provide.
- (5) Where under subsection (3) an exception from subsection (1) or (2) is in force, a person does not commit an offence under that subsection if he reasonably believes that the exception applies.
- (6)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래한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 (3) 장관은 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 (a) 당국이 다음을 확신한다.
- (i) 제32조에 위배되는 보상이 없거나 제공되지 아니하다.
- (ii) 규정에 명시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
- (b)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준수한다.
- (4) 제(3)항에 따른 규정에는 당국이 따라 야 할 규정으로 결정할 대상인 사안과 관련 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검토를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결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가 제(3)항에 따라 시행되면, 누구든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항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6) 이 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약식판결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1 weeks, or
- (b)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 (c) to both.
- (7) In this section—

"reward"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32;

"transplantable material" means material of a description specified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34 Information about transplant operations

-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gulations requiring such pers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to supply to such authority as may be so specified such information as may be so specified with respect to transplants that have been or are proposed to be carried out using transplantable material removed from a human body.
- (2) Any such authority shall keep a record of information supplied to it in pursuance of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 (3)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fails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comply with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or

- (a) 51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b) 표준 등급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c)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7)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보상"이란 제3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 미이다.

"이식 가능 물질"이란 장관이 제정한 규정 에서 명시하여 설명한 물질을 말한다.

제34조(이식수술에 대한 정보)

- (1) 장관은 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체에서 제거된 이식 가능한 물질을 이용하여 수행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이식과 관련하여 지정될 수 있는 정보를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해당 당국은 이 조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의 기록을 비치한다.
- (3) 다음의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 (a) 이 조에 따른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한다.

- (b) in purported compliance with such regulations, he knowingly or recklessly supplies information which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respect.
- (4)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3)(a)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3 on the standard scale.
- (5)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3)(b)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 (6) In this section, "transplantable material"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33.

General

35 Agency arrangements and provision of services

- (1) Arrangements may be made between the Authority and a government department, a public authority or the holder of a public office ("the other authority") for—
- (a) any functions of the Authority to be carried out by, or by members of staff of, the other authority, or
- (b) the provision by the other authority of administrative,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to the Authority.
- (2) Arrangements under subsection (1)(a)

- (b)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는 주장에서, 해 당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질적 측면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다.
- (4) 제(3)항제(a)호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약식판결로 표준 등급 3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한다.
- (5) 제(3)항제(b)호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약식판결로 표준 등급 5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한다.
- (6) 이 조에서 "이식 가능 물질"이란 제33 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일반조항

제35조(기관의 조치 및 서비스 제공)

- (1) 당국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직자 ("다른 당국") 간에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다.
- (a) 다른 당국이나 그 직원 중 일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당국의 직무
- (b) 해당 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행정적,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 제공
- (2) 제(1)항제(a)호에 따른 조치는 당국의

shall not affect responsibility for the carrying—out of the Authority's functions.

(3) Subsection (1)(a) shall not apply to functions of making subordinate legisl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Interpretation Act 1978 (c. 30)).

36 Annual report

- (1) The Authority shall prepare—
- (a) a report for the first twelve months of its existence, and
- (b) a report for each succeeding period of twelve months.
- (2) A report under this section shall deal with the activities of the Authority in the period to which the report relates.
- (3) The Authority shall send each report under this section—
- (a) to the Secretary of State,
- (b) to the Welsh Ministers, and
- (c) to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to which the report relates.

(4)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lay a copy of each report received by him under this section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3) 제(1)항제(a)호는 하위 법령(「해석법 (1978)」(법률 제30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을 제정하는 직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6조(연례보고서)

- (1) 당국은 다음을 작성한다.
- (a) 그 존재의 첫 12개월에 대한 보고서
- (b) 후속 기간의 12개월 각각에 대한 보고 서
- (2) 이 조에 따른 보고서는 보고와 관련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당국의 활동을 다룬다.
- (3) 당국은 이 조에 따른 각 보고서를 다음에 대하여 제출한다.
- (a) 장관
- (b) 웨일스 장관
- (c)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
- 이 경우 보고서가 관련된 기간이 종료된 후 가급적 신속하게 전달한다.
- (4) 장관은 각 의회에 이 조에 따라 수령한 각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 (5)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shall lay a copy of each report received by it under this section before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 (5A) The Welsh Ministers shall lay a copy of each report received by them under this sectio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37 Directions

- (1) The Authority may give directions for any purpose for which directions may be given under this Part.
- (2) Any power under this Part to give directions includes power to vary or revoke directions given in previous exercise of the power.
- (3) Any power under this Part to give directions is exercisable by instrument in writing.
- (4) Directions under this Part to a particular person shall be given by serving notice of the directions on the person.
- (5) Directions under this Part in respect of any licence (including one which has ceased to have effect) may be given—
- (a) by serving notice of the directions on the person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e cessation)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holder of the licence, or
- (b) if it appears to the Authority that it is

- (5)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는 이 조에 따라 수령한 각 보고서의 사본을 북아일랜드 의 회에 제출한다.
- (5A) 웨일스 장관은 이 조에 따른 각 보고 서의 사본을 웨일스 의회에 제출한다.

제37조(지시)

- (1) 당국은 이 부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지 시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 이 부에 따른 지시권한에는 종전의 권 한 행사로 발부한 지시를 변경하거나 취소 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 (3) 이 부에 따른 지시권한은 법률 증서로 행사할 수 있다.
- (4) 해당인에 대한 이 부에 따른 지시는 그 사람에게 지시에 대한 통지를 송달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 (5) 허가(효력이 정지된 허가를 포함한다) 와 관련된 이 부에 따른 지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내려질 수 있다.
- (a) 허가의 지정된 개인 또는 보유자인 사람(또는 그 지정이나 보유를 중단하기 직전인 사람)에게 지시 통지를 송달한다.
- (b) 당국이 해당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not practicable to give notice in that way, by publishing the directions in such way as, in its opinion, is likely to bring them to the attention of the persons to whom they are applicable.

- (6) Directions under this Part which appear to the Authority to be general directions may be given by publishing them as mentioned in subsection (5)(b).
- (7)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directions under Schedule 2.

38 Duties in relation to carrying out functions

- (1) The Authority must carry out its functions effectively,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 (2) In carrying out its functions, the Authority must, so far as relevant, have regard to the principles of best regulatory practice (including the principles under which regulatory activities should be transparent, accountable, proportionate, consistent and targeted only at cases in which action is needed).

Exceptions

39 Criminal justice purposes

(1) Subject to subsection (2), nothing in section 14(1) or 16(2) applies to anything done for purposes related to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상 적용 대상인 사람의 주의를 끌 가능 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시를 공표한다.

- (6) 당국에 일반적 지시로 표시되는 이 부 에 따른 지시는 제(5)항제(b)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표하여 내려질 수 있다.
- (7) 이 조는 부칙 2의 지시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38조(직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

- (1) 당국은 그 직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 이며 경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당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최선의 규제 관행 원칙을 준수한 다(규제활동이 투명하며 책임감 있고 비례 적이며 일관되고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예외

제39조(형사사법 목적)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14조제 (1)항 또는 제16조제(2)항은 다음과 관련 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 (a) the prevention or detection of crime, or
- (b) the conduct of a prosecution.
- (2) Subsection (1) does not except from section 14(1) or 16(2) the carrying—out of a post— mortem examination for purposes of functions of a coroner.
- (3) The reference in subsection (2) to the carrying—out of a post—mortem examination does not include the removal of relevant material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from a part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at the first place where the body or part is situated to be attended by a constable.
- (4)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a), detecting crime shall be taken to include—
- (a) establishing by whom, for what purpose, by what means and generally in what circumstances any crime was committed, and
- (b)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by whom any crime was committed;
- and the reference in subsection (1)(a) to the detection of crime includes any detection outside the United Kingdom of any crime or suspected crime.
- (5) In subsection (1)(b), the reference to a prosecution includes a prosecution brought in respect of any crime in a

- (a) 범죄의 예방 또는 탐지
- (b) 기소 수행
- (2) 제(1)항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6 조제(2)항에서 검시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부검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 (3) 제(2)항의 부검의 이행에는 그 신체나 신체 일부가 위치하고 경찰관이 참석한 첫 번째 장소에서 사망자의 신체나 사망자의 신체 일부로부터 관련 물질을 제거하는 것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제(a)호의 목적상, 범죄의 탐지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 목적, 수단 및 일반적인 상황을 확립한다.
- (b)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포.
- 그리고 제(1)항제(a)호의 범죄 탐지에는 영국 역외에서의 범죄 또는 의심되는 범죄 에 대한 모든 탐지가 포함된다.
- (5) 제(1)항제(b)호에서 기소는 영국 역외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기소를 포함한다.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 (6)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crime include a reference to any conduct which—
- (a) constitutes one or more criminal offences (whether under the law of a part of the United Kingdom or of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 (b) is, or corresponds to, any conduct which, if it all took place in any one part of the United Kingdom, would constitute one or more criminal offences, or
- (c) constitutes one or more service offenc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rmed Forces Act 2006.

40 Religious relics

- (1) This section applies—
- (a) to the use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at a place of public religious worship or at a place associated with such a place, and

- (b) to the storage of—
- (i)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or
- (ii) relevant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 (6) 이 조에서 범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a) 하나 이상의 형사범죄를 구성한다(영국의 한 지역 또는 영국 역외의 국가 또는 영토의 법률에 따른 것인지는 상관없다).
- (b) 모든 범죄가 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면 하나 이상의 형사범죄를 구성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행위이다.
- (c) 「국군법(2006)」에서 의미하는 하나이상의 복무 범죄를 구성한다.

제40조(종교적 유해)

- (1)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위의 신체 등은 공공 종교 예배 장소 또는 해당 장소와 관련된 장소에서의 공개 전시 를 목적으로 한다.

- (b) 다음의 저장
- (i) 사망자의 신체
- (ii)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

a human body,

for use for the purpose mentioned in paragraph (a).

- (2) An activit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excluded from sections 14(1) and 16(2) if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 (a) the body or material to which the activity relates, and
- (b) the religious worship which takes place at the place of public religious worship concerned.
-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lace is associated with a place of public religious worship if it is used for purposes associated with the religious worship which takes place there.

Supplementary

41 Interpretation of Part 2

(1) In this Part—

"the 2007 Regulations" means the Human Tissue (Quality and Safety for Human Application) Regulations 2007;

"the 2012 Regulations" means the Quality and Safety of Organs Intended for Transplantation Regulations 2012;

"anatomical specimen" means—

위의 신체 등은 제(a)호에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2) 이 조가 적용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16 조제(2)항에서 제외된다.
- (a) 활동과 관련된 신체 또는 물질
- (b) 공공 종교 예배 관련의 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종교 예배
-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장소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예배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장소는 공공 종 교 예배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충조항

제41조(제2부의 해석)

(1) 이 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2007년 규정"은 「인체 조직 (인간 적용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규정(2007)」을 말하다.

"2012년 규정"이란 「이식용 장기의 품질 및 안전 규정(2012)」을 말한다.

"해부학 시료"란 다음을 말한다.

- (a)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or
- (b)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in the course of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including separated parts of such a body);

"appeals committee"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0(2);

"designated individual", in relation to a licence, means the individual designated in the licence as the person under whose supervision the licensed activity is authorised to be carried on;

"export" means export from Engl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to a place outside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import" means import into Engl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from a place outside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scheduled purpose" means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2) In this Part, references to the carrying—out of an anatomical examination are to the carrying—out of a macroscopic examination by dissection for anatomical purposes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and, where parts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are separated in the course of such an examination, include the

- (a) 해부학 시험을 목적으로 사용할 사망자 의 신체
- (b) 해부학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 정에 있는 사망자의 신체(해당 신체의 분리 된 일부를 포함한다)

"항소위원회"란 제20조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지정된 개인"이란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된 활동에 대한 감독을 승인받은 사람의 감독 을 받는 허가에 지정된 개인을 말한다.

"수출"이란 잉글랜드, 웨일스 또는 북아일 랜드에서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이외의 장소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란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잉글랜드,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된 목적"이란 부칙 1에 명시된 목적을 말한다.

(2) 이 부에서 해부학 검사의 수행이란 해 부학적 목적으로 사망자의 신체를 해부하여 육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망자 의 신체 일부가 해당 검사 과정에서 분리되 는 경우에는 해부학적 목적으로 그 일부를 해부하여 육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2004) [

carrying—out of a macroscopic examination by dissection of the parts for those purposes.

(3) In this Part, references to a person to whom a licence applies are to a person to whom the authority conferred by the licence extends (as provided by section 17).

PART 3 MISCELLANEOUS AND GENERAL

Miscellaneous

42 Power of Human Tissue Authority to assist other public authorities

- (1) The Authority may if it thinks it appropriate to do so provide assistance to any other public authority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purpose of the exercise by that authority of its functions.
- (2) Assistance provided by the Authority under this section may be provided on such terms, including terms as to payment, as it thinks fit.

43 Preservation for transplantation

(1) Where part of a body lying in a hospital, nursing home or other institution is or may be suitable for use for transplantation, it shall be lawful for the person having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3) 이 부에서 허가가 적용되는 사람이란 허가 확장(제1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 미이다)에서 부여한 권한이 적용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부 기타조항 및 일반조항

기타규정

제42조(인체조직청의 다른 공공기관 지원 권한)

- (1) 당국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상 권한에 따른 행사의 목적을 위하여 영국의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을 제공한다.
- (2) 이 조에 따라 당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이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불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다.

제43조(이식을 위한 보존)

(1) 신체의 일부가 병원에 저장되어 있고 요양원이나 다른 기관이 이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적절한 경우 그 기관을 통제 및 관리하는 사람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적법 하다.

- (a) to take steps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art for use for transplantation, and
- (b) to retain the body for that purpose.
- (2) Authority under subsection (1)(a) shall only extend—
- (a) to the taking of the minimum steps necessary for the purpose mentioned in that provision, and
- (b) to the use of the least invasive procedure.
- (3) Authority under subsection (1) ceases to apply once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consent making removal of the part for transplantation lawful has not been, and will not be, given.
- (4) Authority under subsection (1) shall extend to any person authorised to act under the authority by—
- (a) the person on whom the authority is conferred by that subsection, or
- (b) a person authorised under this subsection to act under the authority.
- (5) An activity done with authority under subsection (1) shall be treated—
- (a) for the purposes of Part 1, as not being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1) applies;
- (b) for the purposes of Part 2, as not

- (a) 이식용 장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 (b) 그 목적을 위하여 신체를 보유한다.
- (2) 제(1)항제(a)호에 따른 권한은 다음으로만 확장된다.
- (a) 해당 조항에 언급된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
- (b) 침습적 처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
- (3) 이식용 신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제 거하는 것에 동의가 없거나 없을 것으로 확 정되면 제(1)항에 따른 권한은 더 이상 적 용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에 따른 권한은 다음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 (a) 그 항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는 사람
- (b) 그 권한에 따라 행위하도록 이 항에서 승인한 사람
- (5) 제(1)항의 권한에 따른 행위는 다음과같이 취급한다.
- (a) 제1조의 목적상, 제1조제(1)항이 적용 되는 활동이 아니다.
- (b) 제2조의 목적상, 제16조가 적용되는

being an activity to which section 16 applies.

- (6) In this section, "body" means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 (7)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part of a body lying in an institution in Wales.

(For provision in these circumstances see section 13 of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44 Surplus tissue

- (1) It shall be lawful for material to which subsection (2) or (3) applies to be dealt with as waste.
- (2) This subsection applies to any material which consists of or includes human cells and which has come from a person's body in the course of his—
- (a) receiving medical treatment,
- (b) undergoing diagnostic testing, or
- (c) participating in research.
- (3) This subsection applies to any relevant material which—
- (a) has come from a human body, and
- (b) ceases to be used, or stored for use, for a purpose specified in Schedule 1.
- (4) This section shall not be read as

활동이 아니다.

- (6) 이 조에서 "신체"란 사망자의 신체를 말한다.
- (7) 이 조는 웨일스의 한 기관에 저장된 신체의 일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다.
- (이 상황에 대한 조항은 「웨일스 인간이식 법(2013)」 제13조를 참조한다)

제44조(잉여 조직)

- (1)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물질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 (2) 이 항은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에 적용되며 그 물질은 해당인의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신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 (a) 치료를 받고 있다.
- (b) 진단시험을 진행 중이다.
- (c) 연구에 참여한다.
- (3) 이 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물질에 적용된다.
- (a) 인체에서 유래한다.
- (b) 부칙 1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저장한다.
- (4) 이 조는 이 조와 별개로 합법적인 것

making unlawful anything which is lawful apart from this section.

45 Non-consensual analysis of DNA

-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has any bodily material intending—
- (i) that any human DNA in the material be analysed without qualifying consent, and
- (ii)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e used otherwise than for an excepted purpose,
- (b) the material is not of a kind excepted under subsection (2), and
- (c) he does not reasonably believe the material to be of a kind so excepted.
- (2) Bodily material is excepted if —
- (a) it is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nd at least one hundred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person's death,
- (b) it is an existing holding and the person who has it is not in possession, and not likely to come into possession, of information from which the individual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can be identified, or
- (c) it is an embryo outside the human

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 니한다.

제45조(DNA의 비합의적 분석)

- (1) 다음의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신체 유래 물질을 보유한다.
- (i) 물질 내 인간의 DNA를 적격 동의 없이 분석한다.
- (ii) 분석의 결과가 예외 목적과는 달리 사용된다.
- (b) 해당 물질은 제(2)항에서 제외된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 (c) 해당인이 그 물질이 그와 같이 제외된 종류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지 아니한다.
- (2) 신체 유래 물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된다.
- (a) 이 조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인의 사망일부터 최소 100년이 경과한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이다.
- (b) 기존 보유물이고 그 물질을 보유한 사람이 관련 물질이 유래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c) 인체 외부의 배아이다.

body.

- (3)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 (a)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is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 (i)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or
- (ii) to a fine, or
- (iii) to both.
- (4) Schedule 4 (which makes provi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qualifying consent" and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n subsection (1)(a)) has effect.
- (5) In this section (and Schedule 4)—
- "bodily material" means material which—
- (a) has come from a human body, and
- (b) consists of or includes human cells;
- "existing holding" means bodily material held immediately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 46 Power to give effect to EU obligations

- (3) 이 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약식판결로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b) 정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i)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ii) 벌금을 부과한다.
- (iii)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 (4) 부칙 4(제(1)항제(a)호의 "적격 동의" 와 "예외 목적의 사용"의 해석을 규정한다) 가 적용된다.
- (5) 이 조(및 부칙 4)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신체 유래 물질"이란 다음과 같은 물질을 말한다.
- (a) 인체에서 유래한다.
- (b)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한 다.
- "기존 보유물"이란 이 조가 시행되기 직전 에 보유하는 신체 물질을 말한다.

제46조(유럽연합 의무에 효력을 부여하는 권한)

-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amend this Act—
- (a)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 relevant obligation or enabling a relevant obligation to be implemented, or
- (b)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matters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a relevant obligation.
- (2) The power under subsection (1)—
- (a) includes (in particular) power to add or omit provisions, and
- (b) includes power consequentially to amend or repeal any other enactment and any instrument made under an enactment.
- (3) In this section, "relevant obligation" means an EU obligation of the United Kingdom relating to material which consists of, includes or is derived from human cells.

47 Power to de-accession human remains

(1) This section applies to the following bodies-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Armouries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The Trustees of the Imperial War Museum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Museum of London

- (1) 장관은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다.
- (a) 관련 의무를 이행하거나 관련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b) 관련 의무에서 발생하거나 관련 의무 와 관련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
- (2) 제(1)항에 따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 조항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특 히) 권한이 포함된다.
- (b) 다른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제정된 법률 증서를 결과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 (3) 이 조에서 "관련 의무"란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되거나 인간 세포에서 유래한 물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의무를 말한다.

제47조(사람 유해 매각 권한)

(1) 이 조는 다음의 단체에 적용된다.

아머리 이사회

대영 박물관 이사회

제국 전쟁 박물관 이사회

런던 박물관 이사회

The Trustees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National Museums and Galleries on Merseyside

The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Science Museum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 (2) Any bod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ay transfer from their collection any human remains which they reasonably believe to be remains of a person who died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before the day on which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if it appears to them to be appropriate to do so for any reason, whether or not relating to their other functions.
- (3) If, in relation to any human remains in their collection, it appears to a bod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 (a) that the human remains are mixed or bound up with something other than human remains, and
- (b) that it is undesirable, or impracticable, to separate them,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2) includes power to transfer the thing with which the human remains are mixed or

국립 해양 박물관 이사회

머지사이드 국립 박물관 갤러리 이사회

자연사 박물관 이사회

과학 박물관 이사회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이사회

- (2)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신체는 이 조가 다른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어떤 이유로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 조 시행일 이전 최소 1천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유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의 유해를 그소장품에서 양도할 수 있다.
- (3) 소장품 중 사람 유해와 관련하여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다음이 밝혀 진 경우 아래와 같다.
- (a) 사람 유해가 혼합되거나 사람 유해가 아닌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다.
- (b)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거나 분리 할 수 없다.
- 이 경우 제(2)항에서 부여한 권한에는 사람 유해가 혼합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것을

bound up.

- (4)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 (2) does not affect any trust or condition subject to which a bod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olds anything in relation to which the power is exercisable.
- (5)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 (2) is an additional power.

General

48 Powers of inspection, entry, search and seizure

Schedule 5 (which makes provision about powers of inspection, entry, search and seiz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has effect.

49 Offences by bodies corporate

- (1)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is committed by a body corporate and is proved to have been committ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or to be attributable to any neglect on the part of—
- (a) 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 (b) any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

he (as well as the body corporate)
commits the offence and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양도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 (4) 제(2)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신뢰나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체에 부과되는 조건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권한의 행사와 관 련된 모든 것을 보유한다.
- (5) 제(2)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추가 권한 이다.

일반조항

제48조(열람,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부칙 5(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열람, 진입, 수색 및 압수의 권한에 관한 조항을 제정한 다)가 적용된다.

제49조(법인체의 위반)

- (1) 이 법에 따른 범죄를 법인체가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의 동의나 묵인 아래 또는 그 태만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판 명된 경우 아래와 같다.
- (a) 법인체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임원
- (b) 해당 자격으로 행위를 시도한 모든 사람
- 이 경우 해당인(법인체를 포함한다)은 범죄를 구성하며 그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을 받

accordingly.

- (2) Where the affairs of a body corporate are managed by its members, subsection
- (1) applies in relation to the acts and defaults of a member in connection with his functions of management as if he were a director of the body corporate.
- (3)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is committed by a Scottish partnership and is proved to have been committ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a partner, or to be attributable to any neglect on the part of a partner, he (as well as the partnership) commits the offence and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accordingly.
- (4) In subsection (3), "partner" includes a person purporting to act as a partner.

50 Prosecutions

No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5, 32 or 33 shall be instituted—

- (a) in England and Wales, except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 (b) in Northern Ireland, except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for Northern Ireland.

51 Offences: Northern Ireland

(1) This Act has effect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with the modifications 게 된다.

- (2) 법인체의 업무가 그 구성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제(1)항은 직무 및 경영상 그 구성원의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해 당 구성원을 법인체의 이사로 간주하여 적 용된다.
- (3) 이 법에 따른 범죄를 스코틀랜드 조합이 저지르고 조합원의 동의나 묵인 아래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거나 조합원의 태만으로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조합뿐만 아니라) 해당인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 (4) 제(3)항에서 "동반자"에는 그 행위를 동반자로서 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제50조(기소)

제5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

- (a)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개시되지 아니한 다. 다만, 검찰총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
- (b) 북아일랜드에서 개시되지 아니한다. 다만, 북아일랜드 검찰총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범죄, 북아일랜드)

(1) 이 법은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specified in subsections (2) and (3).

- (2) In sections 32(5)(a) and 33(6)(a), for "51 weeks" there is substituted "6 months".
- (3) In section 32(4)(a)(i), for "12 months" there is substituted "6 months".

52 Orders and regulations

- (1) Any power to make orders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includes power—
- (a) to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and
- (b) to make incidental, supplementary, consequential or transitional provision or savings.
- (2) Any power to make orders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is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 (3) A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an order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except sections 1(11), 3(9), 7(4), 10(9), 14(4), 16(5), 27(9), 33(3) and (7), 46(1) and 54(10) and paragraphs 6(2), 12(2) and 13 of Schedule 4,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 (4) No order under section 1(11), 10(9),14(4), 27(9) or 54(10) or paragraph 13 ofSchedule 4, and no regulations under

수정을 반영하여 북아일랜드에 적용한다.

- (2) 제32조제(5)항제(a)호와 제33조제(6) 항제(a)호 중 "51주"를 "6 개월"로 대체한 다.
- (3) 제32조제(4)항제(a)호(i)목 중 "12개 월"을 "6개월"로 대체한다.

제52조(명령 및 규정)

-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포함한 다.
- (a) 다른 경우에 대하여 다른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b) 부수조항, 보충조항, 결과조항 및 경과 조항 또는 유보조항을 제정한다.
- (2)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위임입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3) 이 법에 따라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 또는 규정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은, 부칙 4 제1조제(11)항, 제3조제(9)항, 제7조제(4) 항, 제10조제(9)항, 제14조제(4)항, 제16 조제(5)항, 제27조제(9)항, 제33조제(3)항 및 제(7)항, 제46조제(1)항 및 제54조제 (10)항 및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제외하고, 상원이나 하원의 결 의를 통하여 폐지될 수 있다.
- (4) 부칙 4 제1조제(11)항, 제10조제(9)항, 제14조제(4)항, 제27조제(9)항, 54조제(10)항 및 제13조에 따른 명령이나 부칙 4

section 3(9), 6, 7(4), 16(5), 33(3) or (7) or 46(1) or paragraph 6(2) or 12(2) of Schedule 4, shall be made unless a draft of the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it, or them, has been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 (4A) No order under section 27(10) may be made by the Welsh Ministers unless a draft of the instrument has been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 (5) Subsections (1) and (2) do not apply to any power of a court.
- (6) Subsections (1) to (3) do not apply to orders under section 58 or 60.
- (7) The power under section 14(4) or 16(5)—
- (a) so far as relating to museums in Wales, may only be exercised with the consent of the Welsh Ministers, and
- (b) so far as relating to museums in Northern Ireland, may only be exercised with the consen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
- (8)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Welsh Ministers and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before act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ection 1(9)(a) and (11);

제3조제(9)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16 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7)항, 제 46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 (2)항에 따른 규정은 해당 명령이나 규정 이 포함된 위임입법 초안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하여 그 결의로 승인되지 않으면 제정할 수 없다.

- (4A) 웨일스 장관은 명령 초안이 웨일스 의회에 제출되고 결의로 승인되지 아니하면 제27조제(10)항에 따른 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
- (5) 제(1)항 및 제(2)항은 법원의 권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제(1)항부터 제(3)항은 제58조 또는 제60조에 따른 명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제14조제(4)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권한
- (a) 웨일스의 박물관과 관련된 경우 웨일스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다.
- (b) 북아일랜드의 박물관과 관련된 경우 문화예술여가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다.
- (8)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행위 하기 전에 웨일스 장관 및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와 협의한다.

제1조제(9)항제(a)호 및 제(11)항

section 4(10)(b); 제4조제(10)항제(b)호 section 7(4); section 8(4)(d); section 10(9); section 14(4); section 16(3) and (5); section 27(9); section 33(3) and (7); section 34(1); section 46(1); section 54(10); paragraphs 6(2), 10(b), 12(2) and 13 of Schedule 4; paragraph 4(5) of Schedule 5. (9) Before acting— 에 스코틀랜드 장관과 협의한다. (a) under section 54(10) in order to (a) 부칙 4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경 amend section 54(9) so far as having 우 제54조제(9)항의 개정을 위한 제54조제

effect for the purposes of Schedule 4, or

(b) under paragraph 6(2), 10(b), 12(2) or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lso consult

13 of Schedule 4.

the Scottish Ministers.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제(d)호 제10조제(9)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제27조제(9)항 제33조제(3)항 및 제(7)항 제3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4조제(10)항 부칙 4 제6조제(2)항, 제10조제(b)호, 제 12조제(2)항 및 제13조 부칙 5 제4조제(5)항 (9) 장관은 다음 조항에 따라 행위하기 전

(10)항

(2004) [

(10) Before act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lso consult such other persons as he considers appropriate—

section 1(11);

section 3(9);

section 6(1);

section 7(4);

section 10(9);

section 14(4);

section 16(5);

section 27(9);

section 33(3) and (7);

section 46(1);

section 54(10);

paragraphs 6(2), 12(2) and 13 of Schedule 4.

53 "Relevant material"

- (1) In this Act, "relevant material" means material, other than gametes, which consists of or includes human cells.
- (2) In this Act, references to relevant material from a human body do not include—
- (a) embryos outside the human body, or

(10) 아울러, 장관은 다음 조항에 따라 행위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과 협의한다.

제1조제(11)항

제3조제(9)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9)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5)항

제27조제(9)항

제33조제(3)항 및 제(7)항

제46조제(1)항

제54조제(10)항

부칙 4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53조("관련 물질")

- (1) 이 법에서 "관련 물질"이란 생식세포를 제외하고, 인간 세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인체에서 유래한 관련 물질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인체 외부의 배아

(b) hair and nail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54 General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adult" means a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natomical examination" means macroscopic examination by dissection for anatomical purposes;

"anatomical purposes" means purposes of teaching or studying, or researching into, the gross structure of the human body;

"the Authority"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1);

"child", except in the context of qualifying relationships, mean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licence" means a licence under paragraph 1 of Schedule 3;

"licensed activity", in relation to a licence, means the activity which the licence authorises to be carried on:

"parental responsibility"—

- (a) in relation to England and Wale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hildren Act 1989 (c. 41), and
- (b)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has the

(b)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머리카락과 손톱

제54조(일반적 해석)

(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성인"이란 18세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해부학 시험"란 해부학적 목적을 위한 것 으로서 해부에 의한 육안 검사를 말한다.

"해부학적 목적"이란 인체의 총체적 구조를 가르치거나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목적을 말 한다.

"당국"이란 제13조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아동"이란 적격 관계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허가"란 부칙 3 제1조에 따른 허가를 말한 다.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된 활동"이란 허가에서 수행하도록 승인한 활동을 말한다.

"부모의 책임"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잉글랜드 웨일스와 관련하여 「아동법 (1989)」(법률 제4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 (b)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북아일랜드

same meaning as in the 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 (S.I. 1995/755 (N.I. 2));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means the Department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

- (2) In this Act—
- (a) references to material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are to material from the body of a person alive at the point of separation, and
- (b) references to material from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are to material from the body of a person not alive at the point of separation.
- (3) In this Act, references to transplantation are to transplantation to a human body and include transfusion.
- (4) In this Act, references to decent disposal include, in relation to disposal of material which has come from a human body, disposal as waste.
- (5) In this Act, references to public display, in relation to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do not include—
- (a) display for the purpose of enabling people to pay their final respects to the deceased, or

아동명령(1995)」(위임입법 제1995/755호 (북아일랜드 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란 보건·사회복지서 비스·공공안전부를 말한다.

- (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 이란 분리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서 유래한 물질을 말한다.
- (b) 사망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물질이란 분리 시점에 살아 있지 아니한 사람의 신체 에서 유래한 물질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이식이란 인체에 대한 이식을 말하며 수혈을 포함한다.
- (4) 이 법에서, 적정한 처분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처분과 관련하여 폐기물로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 (5) 이 법에서, 사망자 신체의 공개 전시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사람들이 사망자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전시

- (b) display which is incidental to the deceased's funeral.
- (6) In this Act "embryo" and "gametes" have the same meaning as they have by virtue of section 1(1), (4) and (6) of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in the other provisions of that Act (apart from section 4A).
- (7)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material shall not be regarded as from a human body if it is created outside the human body.
- (8)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xcept section 49, a person is another's partner if the two of them (whether of different sexes or the same sex) live as partners in an enduring family relationship.
- (9) The following are qualifying relationship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pousecivil partner, partner, parent, child, brother, sister, grandparent, grandchild, child of a brother or sister, stepfather, stepmother, half-brother, half-sister and friend of long standing.
- (10)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subsection (9).

55 Financial provisions

There shall be paid out of money provided by Parliament—

(a) any expenditure incurred by the

- (b) 사망자의 장례식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 (6) 이 법에서, "배아" 및 "생식세포"란 「인간 수정 및 발생학법(1990)」 제1조제 (1)항, 제(4)항 및 제(6)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제4A조는 제외한다).
- (7) 이 법의 목적상, 물질이 인체 외부에서 생성된 경우 인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 (8) 이 법의 목적상, 제49조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성 또는 동성인지는 상관없다)이 영속적인 가족관계 동반자로 살고 있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동반자인 것으로 본다.
- (9) 다음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적격 관계이다 배우자(동성 결혼을 포함한다), 동반자, 부모, 아동, 형제, 자매, 조부모, 손 자, 형제자매의 아동, 의붓 아버지, 의붓 어 머니, 이복형제, 이복자매 및 오랜 친구
- (10) 장관은 명령으로 제(9)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55조(재정조항)

의회가 제공한 자금으로 다음을 지불한다.

(a)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한 장관의 지출

Secretary of State in consequence of this Act, and

(b) any increase attributable to this Act in the sums payable out of money so provided under any other enactment.

56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6 (consequential amendments) has effect.

57 Repeals and revocations

The enactments and instruments specified in Schedule 7 are hereby repealed or revoked to the extent specified.

58 Transition

- (1) In relation to an offence commit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154(1)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c. 44), the reference in section
 32(4)(a)(i) to 12 months is to be read as a reference to 6 months.
- (2) In relation to an offence commit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281(5)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the reference in each of sections 32(5)(a) and 33(6)(a) to 51 weeks is to be read as a reference to 6 months.
-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make in connection with the coming into force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such transitional provision or savings as he considers

(b)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이 법으로 인하여 증 가되는 금액

제56조(결과적 개정)

부칙 6(결과적 개정)이 적용된다.

제57조(폐지 및 취소)

부칙 7에 명시된 법령 및 법률 증서는 이에 따라 폐지되거나 지정된 범위까지 취소된다.

제58조(경과조항)

- (1) 「형사사법법(2003)」(법률 제44호) 제154조제(1)항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죄와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제(a)호(i)호의 12개월은 6 개월로 해석한다.
- (2) 「형사사법법(2003)」 제281조제(5) 항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죄와 관련하여 제 32조제(5)항제(a)호와 제33조제(6)항제(a) 호에서 각각 "51주"는 "6개월"로 해석한다.
- (3) 장관은 위임입법에 의하여 제정된 명 령으로 자신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 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조항의 시행과 관련 하여 경과조항이나 유보조항을 제정할 수

necessary or expedient.

- (4) The power under subsection (3) includes power to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 (5) Before making provision under subsection (3) in connection with the coming into force in England and Wales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Welsh Ministers.
- (6) Before making provision under subsection (3) in connection with the coming into force in Northern Ireland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7) Before making provision under subsection (3) in connection with the coming into force in Scotland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Scottish Ministers.

59 Extent

-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this Act extends to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only.
- (2) Sections 58(1), (2) and (5) and 60(3) extend to England and Wales only.
- (3) Sections 51(1) to (3), 58(6) and

있다.

- (4) 제(3)항의 권한에는 다른 경우에 대하여 다른 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 (5)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 여 제(3)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웨일스 장관과 협의한다.
- (6)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 조항의 북아일랜드 시행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와 협의한다.
- (7)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을 스코틀랜드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 (3)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 은 스코틀랜드 장관과 협의한다.

제59조(범위)

- (1) 다음의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은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 다.
- (2) 제58조(1)항, 제(2)항 및 제(5)항과 제60조제(3)항은 잉글랜드 웨일스에만 적용된다.
- (3)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 제58조제

- 60(4) extend to Northern Ireland only.
- (4) The following provisions also extend to Scotland—
- (za) section 13,
- (a) sections 45(1) to (3) and (5) and 47,
- (b) section 49 so far as having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5,
- (c) section 52 so far as relating to orders under section 54(10) or paragraph 13 of Schedule 4 or regulations under paragraph 6(2) or 12(2) of that Schedule,
- (d) section 54(2)(a), (3), (8) and (9) so far as having effect for the purposes of Schedule 4.
- (e) section 54(6) and (7) so far as having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5 or Schedule 4.
- (f) sections 54(10) and 58(3) and (4), this section and sections 60(1) and (2)and 61.
- (fa) Schedule 2.and
- (g) Schedule 4, except paragraphs 3 and 9(2) to (5), and section 45(4) so far as relating thereto.
- (5) The following provisions extend to Scotland only-

- (6)항 및 제60조제(4)항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다.
- (4) 다음의 조항은 스코틀랜드로 확장 적 용된다.
- (za) 제13조
- (a)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과 제47조
- (b) 제45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경 우, 제49조
- (c) 부칙 제54조제(10)항 및 제13조에 따 른 명령이나 같은 부칙 제6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 제52조
- (d) 부칙 4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경 우 제54조제(2)항제(a)호, 제(3)항, 제(8) 항 및 제(9)항
- (e) 부칙 4 제45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 되는 경우, 제54조제(6)항 및 제(7)항
- (f) 제54조제(10)항과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이 조와 제60조제(1)항 및 제(2) 항 그리고 제61조
- (fa) 부칙 2
- (g) 그에 관련되는 경우 부칙 4. 다만, 제3 조, 제9조제(2)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 45조제(4)항은 제외한다.
- (5) 다음의 조항은 스코틀랜드로만 확장 적용된다.

- (a) sections 58(7) and 60(5),
- (b) paragraphs 3 and 9(4) and (5) of Schedule 4, and section 45(4) so far as relating thereto, and
- (c) paragraphs 2 and 4 of Schedule 6, and section 56 so far as relating thereto.
- (6) Subject to subsection (5), any amendment made by this Act has the same extent as the enactment to which it relates.
- (7) Subject to subsection (8), any repeal or revocation made by this Act has the same extent as the enactment or instrument to which it relates.
- (8)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9), the repeals of the following do not extend to Scotland—
- (a) the Human Tissue Act 1961 (c. 54),
- (b) the Anatomy Act 1984 (c. 14),
- (c) the Corneal Tissue Act 1986 (c. 18), and
- (d) the Human Organ Transplants Act 1989 (c. 31).
- (9) The repeals of the following provisions do extend to Scotland—
- (a) in section 1(4A)(b) of the Human Tissue Act 1961, the words ", Primary Care Trust";

- (a) 제58조제(7)항 및 제60조제(5)항
- (b) 그에 관련되는 경우 부칙 4 제3조, 제 9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45조제 (4)항
- (c) 관련 있는 경우 부칙 6 제2조, 제4조 및 제56조
- (6)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의 모든 개정은 관련 있는 제정법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 (7) 제(8)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폐지 또는 취소는 관련 있는 법령이나 법률 증서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 (8) 제(9)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폐지는 스코틀랜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인체조직법(1961)」(법률 제54호)
- (b) 「해부학법(1984)」(법률 제14호)
- (c) 「각막조직법(1986)」(법률 제18호)
- (d) 「인간 장기 이식법(1989)」(법률 제 31호)
- (9) 다음 조항의 폐지는 스코틀랜드로 확장 적용된다.
- (a) 「인체조직법(1961)」 제1조제(4A)항 제(b)호 중 "1차 진료 단체"

- (b) in section 1(10) of that Act—
- (i) 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health authority",
- (ii) in the definition of "NHS trust", the word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or", and
- (iii) the words after the definition of that expression;
- (c) section 4(5) of the Anatomy Act 1984;
- (d) in the Human Organ Transplants Act 1989—
- (i) in section 1, the words "in Great Britain", in the first and third places where they occur,
- (ii) in sections 2 and 3, the words "in Great Britain", in each place, and
- (iii) sections 5 and 6.

60 Commencement.

(1)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this section, and

sections 58(3) to (7), 59 and 61.

(2)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ct

- (b) 같은 법 제1조제(10)항 중 다음의 조 항
- (i) "보건당국"의 정의 중 제(a)호
- (ii) "국가보건서비스 기관"의 정의 중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호법 (1990)」"
- (iii) 위의 정의 뒤에 위치한 단어
- (c) 「해부학법(1984)」 제4조제(5)항
- (d) 「인간 장기 이식법(1989)」
- (i) 제1조 중 "영국에서"라는 단어, 첫 번째 와 세 번째 위치
- (ii) 제2조와 제3조 중, 모든 "영국에서"라 는 단어
- (iii) 제5조 및 제6조

제60조(시행)

(1) 다음의 조항은 이 법이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 및

제58조제(3)항부터 제(7)항, 제59조 및 제61조

(2) 이 법의 나머지 조항은 장관이 위임입

shall come into force on such day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by order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and different days may be so appointed for different purposes.

- (3) Before exercising the power under subsection (2) in relation to the coming into force in England and Wales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Welsh Ministers.
- (4) Before exercising the power under subsection (2) in relation to the coming into force in Northern Ireland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5) Before exercising the power under subsection (2) in relation to the coming into force in Scotland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except section 47,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Scottish Ministers.
- (6) No day may be appointed under subsection (2)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 or 8 which is earlier than the end of the period of three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Authority first issues a code of practice dealing with the matters mentioned in section 26(2)(h) and (i).
- (7) If the Authority first issues a code of

법으로 제정하는 명령에 지정된 날부터 시 행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날을 지정 할 수 있다.

- (3)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 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웨일스 장관과 협의한다.
- (4)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 조항의 북아일랜드 시행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와 협의한다.
- (5) 제47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을 스코틀랜드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 (3)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 은 스코틀랜드 장관과 협의한다.
- (6) 제5조 및 제8조의 시행을 위하여 당국이 제26조제(2)항제(h)호와 제(i)호에서 언급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규범을 처음 공표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2)항에 따라 특정일을 지정할 수 없다.
- (7) 당국이 다른 문제를 다루는 실무규범

practice dealing with one of the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6) before it first issues a code of practice dealing with the other, that subsection shall have effect as if the three month period were one beginning with the later of—

- (a) the day on which the Authority first issues a code of practice dealing with the matter mentioned in section 26(2)(h), and
- (b) the day on which the Authority first issues a code of practice dealing with the matter mentioned in section 26(2)(i).

6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Human Tissue Act 2004.

SCHEDULES

SCHEDULE 1 Section 1 SCHEDULED PURPOSES

PART 1 PURPOSES REQUIRING CONSENT: GENERAL

- 1 Anatomical examination.
- 2 Determining the cause of death.
- 3 Establishing after a person's death the efficacy of any drug or other treatment administered to him.
- 4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a living or deceased

을 먼저 공표하기 전에 제(6)항에 언급된 문제 중 하나를 다루는 실무규범을 먼저 공 표하는 경우 같은 항의 3개월은 다음 중 나중의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 (a) 당국이 제26조제(2)항제(h)호에 언급 된 문제를 다루는 실무규범을 최초로 공표 하는 날
- (b) 당국이 제26조제(2)항제(i)호에 언급 된 문제를 다루는 실무규범을 처음 공표하 는 날

제61조(약칭)

이 법은 「인체조직법(2004)」로 인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1 제1조 관련 예정된 목적

제1부 동의가 필요한 목적, 일반조항

제1조(해부학 시험)

제2조(사망 원인 결정)

제3조(사망 후 해당인에게 투여된 약물 등 처치의 유효성 확립)

제4조 다른 사람(미래의 사람을 포함한다) 과 관련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망자에 person which may be relevant to any 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 5 Public display.
- 6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 7 Transplantation.

PART 2 PURPOSES REQUIRING CONSENT: DECEASED PERSONS

- 8 Clinical audit.
- 9 Education or training relating to human health.
- 10 Performance assessment.
- 11 Public health monitoring.
- 12 Quality assurance.

SCHEDULE 2 Section 13 THE HUMAN TISSUE AUTHORITY

1 Membership

- (1) The Authority shall consist of—
- (a) a chairman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b) such number of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s the Secretary of State thinks fit,
- (c) a member appointed by the Welsh Ministers, and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학적 정보를 획득한 다.

제5조(공개 전시)

제6조(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

제7조(이식)

제2부 동의가 필요한 목적, 사망자

제8조(진료평가)

제9조(인간의 보건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

제10조(근무평정)

제11조(공중보건 모니터링)

제12조(품질보증)

부칙 2 제13조 관련 인체조직청

제1조(구성원)

- (1) 당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장관이 임명한 의장
- (b)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임명한 다른 구성원의 수
- (c) 웨일스 장관이 임명한 구성원

- (d) a member appointed by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exercise his power to appoint members of the Authority to secure that at all times not less than half of the members are persons who do not have, and have not had, a professional interest in any of the kinds of activity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 (3) The Scottish Ministers may nominate a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Authority to make representations about the carrying out of its functions in Scotland.

2 Disqualification

A person is disqualified for being appointed as chairman of the Authority if he has, or has had, a professional interest in any of the kinds of activity within the remit of the Authority.

3

- (1) A person is disqualified for being appointed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if—
- (a) he is the subject of a bankruptcy restrictions order or an interim bankruptcy restrictions order, or a debt relief restrictions order or interim debt relief restrictions order under Schedule 4ZB of the Insolvency Act 1986,
- (b) a bankruptcy order has been made

- (d)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에서 임명한 구 성원
- (2) 장관은 언제나 구성원의 절반 이하가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종류의 활동에서 직 업적 이익을 가지거나 가진 적이 없는 사람 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국의 구성 원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한다.
- (3) 스코틀랜드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할 권한 을 가진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2조(자격 박탈)

해당인이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종류의 활 동에서 직업적 이익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국의 의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박탈된다.

제3조

- (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 의장 또는 당국의 다른 구성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박 탈된다.
- (a) 해당인이 「도산법(1986)」 부칙 4ZB 에 따른 파산제한명령, 임시파산제한명령, 채무구제제한명령 및 임시채무구제제한명령 의 대상이다.
- (b) 북아일랜드 법원에서 해당인에게 파산

against him by a court in Northern Ireland, his estate has been sequestrated by a court in Scotland or, under the law of Northern Ireland or Scotland, he has made a composition or arrangement with, or granted a trust deed for, his creditors, or

- (c) in the last five years he has been convicted in the United Kingdom, the Channel Islands or the Isle of Man of an offence and has had a qualifying sentence passed on him.
- (2) Where a person is disqualified under sub-paragraph (1)(b) because a bankruptcy order has been made against him or his estate has been sequestrated, the disqualification shall cease—
- (a) on his obtaining a discharge, or
- (b) if the bankruptcy order is annulled or the sequestration of his estate is recalled or reduced, on the date of that event.
- (3) Where a person is disqualified under sub-paragraph (1)(b) because of his having made a composition or arrangement with, or granted a trust deed for, his creditors, the disqualification shall cease—
- (a) at the end of the period of fiv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e terms of the deed of composition or arrangement or trust deed are fulfilled, or
- (b) if, before then, he pays his debts in full, on the date on which the payment is

명령을 내렸고 해당인의 재산을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가압류하였거나 북아일랜드 또는 스코틀랜드의 법에 따라 채권자와 타협, 합 의하거나 신탁증서를 제공하였다.

- (c) 과거 5년 동안 해당인은 영국, 채널제도 또는 맨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해당인에게 적격 선고가 내려졌다.
- (2) 해당인이 파산명령 또는 그의 부동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제(1)항제(b)호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그 자격 박탈은 다음의 경우 정지된다.
- (a) 해제 성립 시
- (b) 파산명령이 무효로 되거나 해당 사건의 날짜에 해당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3) 해당인이 채권자들과 타협 또는 합의를 했거나 신탁증서를 부여하여 제(1)항제(b)호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었을 시 그 자격 박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된다.
- (a) 타협이나 합의 증서, 신탁증서의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 (b) 그 전에는, 해당인이 자신의 채무를 전

completed.

- (4)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c), the date of conviction shall be taken to be the ordinary date on which the period allowed for making an appeal or application expires or, if an appeal or application is made, the date on which the appeal or application is finally disposed of or abandoned or fails by reason of its non-prosecution.
- (5) In sub-paragraph (1)(c), the reference to a qualifying sentence is to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whether suspended or not) without the option of a fine.

4 Tenure of offic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chedule, the chairman and other members of the Authority shall hold and vacat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ir respective appointments.

5

- (1) The terms of appointment of the chairman and other members of the Authority shall be such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subject to subparagraph (2).
- (2) Appointment as chairman or other member shall be for a term not exceeding

액 지불한 경우 그 지불이 완료된 날

- (4) 제(1)항제(c)호의 목적을 위하여 유죄 판결일은 항소나 신청에 허용된 기간이 만 료되는 날로 간주한다. 항소나 신청이 제기 되는 경우 그 항소나 신청이 인하여 최종적 으로 처분, 기각 및 불기소로 인하여 각하 된 날로 간주한다.
- (5) 제(1)항제(c)호에서, 적격 선고란 벌금 형의 고려를 배제한 3개월 이하의 징역형 (일시 중지 여부에 상관없다) 선고를 말한 다.

제4조(직책 보유)

본 부칙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당국의 의장이나 그 밖의 구성원은 각 임명조건에 따라 그 직책을 보유하거나 퇴임한다.

제5조

- (1) 당국의 의장이나 그 밖의 구성원의 임 명조건은 장관이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의장 또는 그 밖의 구성원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명된다.

three years.

6

Previous serv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does not affect a person's eligibility for appointment to either office.

7

A person holding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may resign that offic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person who appointed him.

8

A person holding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shall cease to hold that office if he ceases to be qualified for appointment to it.

9

A person may be removed from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by the person who appointed him if that person is satisfied that he—

- (a) has been absent from meetings of the Authority for six consecutive months, or longer,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ity, or
- (b) is unable or unfit to carry out his functions as chairman or other member.

제6조

당국의 의장이나 구성원으로 종전에 재직한 경우 어떠한 직책에 임명될 때 그 사람의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당국의 의장이나 그 밖의 구성원으로 취임 한 사람은 임명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 함으로써 그 직책에서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당국의 의장이나 그 밖의 구성원으로 취임 한 사람은 그 직책에 임명될 자격이 없어질 경우 그 직책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

해당인을 임명한 사람이 피임명자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신하면 해당인을 당국의 의 장이나 구성원 직책에서 면직할 수 있다.

- (a) 당국의 허락 없이 6개월 연속 또는 그 이상 당국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 (b) 의장 또는 다른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 다.

9A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suspend a person from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if it appears to the appointing authority that one o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9 is or may be satisfied in relation to the person.

9B

- (1) This paragraph applies where the appointing authority decides to suspend a person under paragraph 9A.
- (2) The appointing authority must give notice to the person of the decision and the suspension takes effect on receipt by the person of the notice.
- (3) A notice under subsection (2) may be—
- (a) delivered in person, in which case the person is treated as receiving it when it is delivered, or
- (b) sent by first class post to the person's last known address, in which case the person is treated as receiving it on the third day after the day on which it was posted.
- (4) The initial period of suspension must not exceed 6 months.
- (5)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review the person's suspension at any time.

제9A조

임명당국은 제9조의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인과 관련하여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의장 또는 그 밖의 당국의 구성원의 직에 있는 특정인을 정직시킬 수 있다.

제9B조

- (1) 이 조는 임명당국이 제9A조에 따라 특정인을 정직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다.
- (2) 임명당국은 그 결정을 해당인에게 통지하야 하며 해당인이 통지를 수령할 때 정 직은 효력을 발생한다.
- (3)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송달된다.
- (a) 직접 송달. 이 경우 해당인은 송달되었을 때에 수령한 것으로 취급된다.
- (b) 1급 우편을 통해 그 사람의 최종 확인 된 주소로 송달되는 경우 해당인은 우편 발 송된 후 3일째에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 다.
- (4) 최초 정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5) 임명기관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정직을 검토할 수 있다.

- (6) The appointing authority must review the person's suspension if requested in writing by the person to do so, but need not carry out a review less than 3 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the initial period of suspension.
- (7) Following a review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 (a) revoke the suspension, or
- (b) suspend the person for another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from the expiry of the current period.
- (8) The appointing authority must revoke the suspension if at any time—
- (a) it decides that neither of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9 is satisfied, or
- (b) it decides that either of those conditions is satisfied but does not remove the person from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 (9) A person who is suspended under paragraph 9A is to be disregarded at any time during the suspension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1)(c) or (d).
- (10) In this paragraph "the appointing authority", in relation to a person appointed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means the person who appointed him.

- (6) 임명기관은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사람의 정직을 검토하여야 하나, 최초 정직기간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7) 검토 후 임명당국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정직을 취소한다.
- (b) 현행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의 다른 기간 동안 해당인을 정직시킨다.
- (8) 임명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정직을 취소하여야 한다.
- (a) 제9항에 언급된 조건 중 어느 것도 충 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 (b) 해당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만 당국의 의장이나 다른 구성원의 직책에서 해당인을 면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9) 제9A조에 따라 정직된 사람은 제1조제(1)항제(c)호 및 제(d)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직기간 동안 계속 고려하지 아니한다.
- (10) 이 조에서 "임명당국"이란 당국의 의장이나 다른 구성원으로 임명된 사람과 관련하여 그 의장 등을 임명한 특정인을 말한다.

9C

- (1) This paragraph applies where a person is suspended from office as chairman under paragraph 9A.
-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a member of the Authority as the interim chairman to exercise the chairman's functions.
-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only appoint a member as the interim chairman if the member is not disqualified for being appointed as chairman by virtue of paragraph 2.
- (4)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interim chairman shall hold and vacat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appointment.
- (5) Appointment as interim chairman shall be for a term not exceeding the shorter of—
- (a) the period ending with either—
- (i) the appointment of a new chairman, or
- (ii) the revocation or expiry of the existing chairman's suspension; and
- (b) the remainder of the interim chairman's term as a member of the Authority.
- (6) Previous service as chairman or

제9C조

- (1) 이 조는 제9A조에 따라 의장을 정직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장관은 의장의 직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임시 의장으로 당국의 구성원을 임명할수 있다.
- (3) 장관은 구성원이 제2조에 의하여 의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 의장직에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 (4) 이 조의 다음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 의장은 그 임명조건에 따라 직책을 보 유하거나 퇴임한다.
- (5) 임시 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음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로 한 다.
- (a) 다음 중 어느 하나와 함께 종료되는 기 간
- (i) 새 의장의 선임
- (ii) 기존 의장에 대한 정직의 해지 또는 만료
- (b) 당국의 구성원으로서 임시 의장의 잔 여 임기
- (6) 종전에 당국의 의장이나 임시 의장으

interim chairman of the Authority does not affect a person's eligibility for appointment as interim chairman.

- (7) A person holding office as interim chairman of the Authority may resign that offic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Secretary of State.
- (8)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move a person from office as interim chairman if he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Authority for another member to be the interim chairman.

10 Remuneration and pensions of members

- (1) The Authority may pay to the chairman or any of the other members of the Authority such remuneration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 (2) The Authority may pay, or make provision for paying, to or in respect of the chairman or any of the other members of the Authority such pensions, allowances, fees, expenses or gratuiti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 (3) The Authority may make a payment to a person who ceases to hold office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f the Authority otherwise than on the expiry of his term of office if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right for that person to receive compensation.

로 재직한 것은 임시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7) 임시 의장으로 취임한 사람은 장관에 게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그 직책에서 사임할 수 있다.
- (8) 장관은 다른 구성원을 임시 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당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임시 의장직에서 해당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구성원의 보수 및 연금)

- (1) 당국은 장관이 결정하는 보수를 의장 또는 당국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불할 수 있 다.
- (2) 당국은 장관이 결정하는 연금, 수당, 수수료, 경비 또는 하사금 등을 의장 또는 당국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3) 당국은 해당인의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면 의장 또는 당국의 구성원으로 더 이상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장관이 해당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004) [

(4) A payment under sub-paragraph (3) shall be of such amount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11 Staff

The Authority may appoint such staff as it considers appropriate,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may determine.

12 Proceedings

Subject to any provision of this Act, the Authority may regulate its own procedure (including quorum).

13

The validity of any proceedings of the Authority shall not be affected by—

- (a) any vacancy in the office of—
- (i) chairman,
- (ii) member appointed by the Welsh Ministers, or
- (iii) member appointed by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 (b) any defect in a person's appointment as chairman or other member, or
- (c) the composition for the time being of the membership of the Authority.

14 Members' interests

(1) The Authority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system for the declaration and

(4) 제(3)항에 따른 지불은 장관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직원)

당국은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에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되는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절차)

이 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당국은 자 체 절차(정족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 다.

제13조

당국 절차의 유효성은 다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a) 다음과 같은 직책의 공석
- (i) 의장
- (ii) 웨일스 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구성원
- (iii)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에서 임명한 구 성원
- (b) 의장 또는 다른 구성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명 관련 결함
- (c) 잠정적으로 구성된 당국의 직원

제14조(구성원의 이익)

(1) 당국은 구성원의 사적 이권을 신고하

registration of private interests of its members.

(2) The Authority shall publish entries recorded in the register of members' interests.

15 Finance

The Secretary of State may out of money provided by Parliament make payments to the Authority of such amounts, at such times and on such conditions (if any) as he considers appropriate.

16 Accounts and audit

- (1) The Authority shall keep proper accounts and proper records in relation to its accounts.
- (2) The Authority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accounts in respect of each of its financial years.
- (3) Any such statement of accounts must comply with any directions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y as to—
- (a) the information to be contained in it,
- (b) the manner in which that information is to be presented, and
- (c) the methods and principles according to which the statement is to be prepared.
- (4) The Authority shall send a copy of each statement of accounts required by

- 고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유지한다.
- (2) 당국은 구성원 이해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항목을 공표한다.

제15조(재정)

장관은 의회가 제공하는 자금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당국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계정 및 감사)

- (1) 당국은 자신의 계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계정과 적절한 기록을 비치한다.
- (2) 당국은 각각의 회계연도에 관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3) 결산보고서는 다음에 관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장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a) 그에 포함할 정보
- (b) 해당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 (c) 작성할 진술서에 따른 방법과 원칙
- (4) 당국은 제(2)항에서 요구하는 각 결산

sub-paragraph (2) to-

- (a) the Secretary of State,
- (b) the Welsh Ministers,
- (c)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and
- (d)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before the end of such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o which the statement relat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specify by notice given to the Authority.

- (5) The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shall lay before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each statement of accounts received by it under subparagraph (4).
- (5A) The Welsh Ministers shall la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each statement of accounts received by them under sub-paragraph (4).
- (6)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shall—
- (a) examine, certify and report on each statement of accounts received by him under sub-paragraph (4), and
- (b) lay a copy of each such statement of accounts, and of his report on it,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 (7) The power under sub-paragraph (3)

보고서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 (a) 장관
- (b) 웨일스 장관
- (c)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
- (d) 감사원장

이 경우 장관이 당국에 대한 통지에서 지정 하는 것으로서 진술이 관련된 회계연도 종 료 후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달한 다.

- (5) 소관 북아일랜드 부서는 수령한 각각 의 결산보고서를 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한 다.
- (5A) 웨일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령 한 각각의 결산보고서를 웨일스 의회에 제 출하다.
- (6) 감사원장은 다음과 같다.
- (a) 제(4)항에 따라 수령한 각 결산보고서를 검사, 인증 및 보고한다.
- (b) 각각의 결산보고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양원에 제출한다.
- (7) 제(3)항에 따른 지시권한에는 종전의

(2004)

to give directions includes power to vary or revoke directions given in previous exercise of the power.

- (8) In this paragraph, "financial year" means—
- (a)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e Authority is established and ending with the next 31st March, and
- (b) each successive period of 12 months ending with 31st March.

17 Instruments

The application of the seal of the Authority shall be authenticated by the signature of any member of the Authority or of any other person who has been authorised for the purpose by the Authority, whether generally or specially.

18

A document purporting—

- (a) to be duly executed under the seal of the Authority, or
- (b) to be signed on its behalf,

shall be received in evidence and be taken, without further proof, to be so executed or signed unless the contrary is shown.

19 Status

(1) The Authority is not to be regarded as the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or as

권한 행사를 통하여 내린 지시를 변경하거 나 취소할 권한이 포함된다.

- (8) 이 조에서 "회계연도"란 다음을 말한 다.
- (a) 당국이 설립된 날부터 그 다음 3월 31 일까지의 기간
- (b) 각각 3월 31에 종료되는 12개월의 후 속 기간

제17조(법률 증서)

당국의 봉인 적용은 일반적인지 특별한 것 에 대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당국의 구성원 또는 당국의 목적을 위하여 승인된 다른 사 람의 서명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제18조

다음의 문서는 아래와 같다.

- (a)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다.
- (b) 당국을 대리하여 서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증거로 접수하며 반증이 없으면 추 가 증거 없이 체결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간 주한다.

제19조(지위)

(1) 당국은 정부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으 로 간주되거나 정부의 지위, 특권 및 면제 enjoying any status, privilege or immunity of the Crown.

(2) The property of the Authority is not to be regarded as property of, or property held on behalf of, the Crown.

20 Supplementary powers

The Authority may do anything which is calculated to facilitate, or is conducive or incidental to, the carrying—out of its functions, but may not borrow money.

21

The Authority may delegate any of its functions (to such extent as it may determine) —

- (a) to any member of the Authority,
- (b) to any member of the staff of the Authority, or
- (c) to a committee consisting of persons each of whom is—
- (i) a member of the Authority, or
- (ii)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Authority.

22 Application of Statutory Instruments Act 1946

를 누리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2) 당국의 자산은 정부의 자산이나 정부 를 대신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0조(보충조항 권한)

당국은 직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산 되거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 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차용 할 수는 없다.

제21조

당국은 그 직무를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위임할 수 있다.

- (a) 당국의 모든 구성원
- (b) 당국 직원의 일원
- (c)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 (i) 당국의 구성원
- (ii) 당국 직원의 일원

제22조(「위임입법에 관한 법률(1946)」에 따른 신청)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1946 (c. 36) shall apply to any power to make orders or regulations conferred by an Act on the Authority as if the Authority were a Minister of the Crown.

23 Public records

In Schedule 1 to the Public Records Act 1958 (c. 51) (definition of public records), in Part 2 of the Table at the end of paragraph 3 the following entry is inserted at the appropriate place— "Human Tissue Authority."

24 Investigation by Parliamentary Commissioner

In Schedule 2 to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967 (c. 13)
(departments and authorities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following entry is
inserted at the appropriate place—
"Human Tissue Authority."

2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In Part 2 of Schedule 1 to the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c. 24) (bodies of which all members are disqualified), the following entry is inserted at the appropriate place—" The Human Tissue Authority."

26 Northern Ireland Assembly Disqualification

In Part 2 of Schedule 1 to the Northern

「위임입법에 관한 법률(1946)」(법률 제 36호)은 당국을 장관으로 간주하고 법에서 당국에 부여한 명령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적용된다.

제23조(공식 기록)

「공공기록물법(1958)」(법률 제51호) 부칙 1(공식 기록의 정의) 제3조의 끝에 있는 표 중 제2부에서 다음의 문구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인체조직청."

제24조(의회 감찰관의 조사)

「의회 감찰관법(1967)」(법률 제13호) 부칙 2(부서 및 당국은 조사 대상이다)에서, 다음 문구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인체조직청."

제25조(하원 자격 박탈)

「하원 자격박탈법1975)」(법률 제24호) 부칙 1 제2부(모든 구성원이 자격 박탈된 신체)에서, 다음 문구를 적절한 위치에 삽 입한다. "인체조직청."

제26조(북아일랜드 의회의 자격 박탈)

「북아일랜드 의회 자격박탈법(1975)」(법

Ireland Assembly Disqualification Act 1975 (c. 25) (bodies of which all members are disqualified), the following entry is inserted at the appropriate place— "The Human Tissue Authority."

27 Freedom of information

In Part 6 of Schedule 1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c. 36) (public authorities), the following entry is inserted at the appropriate place—" The Human Tissue Authority."

SCHEDULE 3 Section 16 LICENCE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6

1 Power to grant licence

The Authority may on application grant a licenc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6.

2 Characteristics of licence

- (1) A licence shall not authorise the carrying—on of more than one activity to which section 16 applies.
- (2) A licence shall—
- (a) specify the premises where the licensed activity is authorised to be carried on, and
- (b) designate an individual as the person under whose supervision the licensed activity is authorised to be carried on.

률 제25호) 부칙 1 제2부(모든 구성원이 자격 박탈된 신체)에서, 다음 문구를 적절 한 위치에 삽입한다." 인체조직청."

제27조(정보의 자유)

「정보자유법(2000)」(법률 제36호) 부칙 1 제6부(공공기관)에서, "인체조직청"을 적 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부칙 3 제16조 관련 제16조의 목적 을 위한 허가

제1조(허가 부여 권한)

당국은 제16조의 목적을 위하여 신청에 따 라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조(허가의 특성)

- (1) 허가는 제16조가 적용되는 하나 이상 의 활동의 수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2) 허가는 다음과 같다.
- (a) 허가된 활동의 수행이 승인된 구내를 명시한다.
- (b) 허가된 행위의 수행을 감독할 사람으 로서 개인을 임명한다.

(3) A licence shall not authorise the

licensed activity to be carried on—

- (a) on premises at different places, or
- (b) under the supervision of more than one individual.
- (4)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 (a) that the licensed activity shall be carried on only on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 (b) that the licensed activity shall be carried on on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ed in the licence as the person under whose supervision it is authorised to be carried on;
- (c) that such information about such matters relating to the carrying—on of the licensed activity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shall be recorded in such form as may be so specified;
- (d) that any record made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paragraph (c) shall be kept until the end of such period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 (e) that there shall be provided to such person and at such intervals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 (i) such copies of, or extracts from, any record to which the condition in paragraph(d) relates, and

- (3) 허가는 허가된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 (a) 다른 장소의 구내
- (b) 1명을 초과하는 개인의 감독
- (4) 허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허가된 활동은 허가에 지정된 구내에서 만 수행하여야 한다.
- (b) 허가된 활동은 그 활동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개인의 감독 아래서만 수행할 수 있다.
- (c) 허가된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시에 지정되는 정보는 그와 같이 지정된 형태로 기록한다.
- (d) 제(c)호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모든 기록은 지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비치한다.
- (e) 지시에 지정된 사람에게 지정된 주기로 다음을 제공한다.
- (i) 제(d)호의 조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사본이나 발췌본

(ii) such other information,

as may be so specified;

- (f) that there shall be paid to the Authority at such times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sums of such amount as may be so specified in respect of its costs in connection with superintend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licences.
- (5) Directions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4) may be given in relation to licences generally, licences of a particular description or a particular licence.

3

-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 licence authorising the storage of anatomical specimens.
- (2)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storage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of the body of a deceased person for use for the purpose of anatomical examination shall not begin before that body's storage there for use for that purpose has been authorised in writing by—
- (a)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 (b) an individual who has the Authority's permission to give such authorisation (see paragraph 12).
- (3)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ii) 다른 정보

(f) 허가조건 준수 감독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 지시에 명시된 금액을 해당 지시에 명시 된 시기에 당국에 납부한다.

(5)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시는 일반 적 허가, 특정 직군 허가 또는 특정 허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조

- (1) 이 조는 해부학 시료의 저장을 승인하는 허가에 적용된다.
- (2) 이 항이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해부학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할 사망자의 신체를 허가에 명시된 건물에 저장하는 행위를,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시신을 해당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다음의 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a) 지정된 개인
- (b)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제12조를 참조한다)
- (3)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허가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any anatomical specimen which is stored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shall be released from storage at the premises only into the possession of a person who i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designated individual to have the specimen in his possession.

- (4)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shall give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3) only if he is satisfied—
- (a) that the person to whom authority is given is a suitable person to have the specimen in his possession, and
- (b) that that person intends to use the specimen only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 (5)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any authority given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3) shall specify—
- (a) the person to whom the authority is given,
- (b) the specimen to which the authority relates,
- (c) the purpose for which the specimen may be used, and

에 명시된 구내에 저장된 모든 해부학 시료 가 그 시료를 보유하도록 지정된 개인이 서 면으로 승인한 사람의 소유를 위하여서만 구내의 저장에서 반출되는 것이다.

- (4)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정 된 개인이 다음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제 (3)항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다.
- (a)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시료를 보유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다.
- (b) 해당인이 교육, 훈련 또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시료를 사용하려 한다.
- (5)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제 (3)항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부여되는 권 한에 다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 (a)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 (b) 권한과 관련된 시료
- (c) 시료가 사용되는 목적

- (d) the duration of the authority.
- (6)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shall give such notice of any authoris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3)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 (7)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such information about authoris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3)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shall be recorded in such form as may be so specified.

4

-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 licence authorising the activity mentioned in section 16(2) (e).
- (2)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any former anatomical specimen which is stored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shall be released from storage at the premises only into the possession of a person who i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designated individual to have the specimen in his possession.
- (3)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2) does not apply to the release from storage of a specimen for the purpose of its decent disposal.

- (d) 권한의 기간
- (6)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정 된 개인이 지시에 명시될 수 있는 제(3)항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승인을 통지하 는 것이다.
- (7)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시 에 지정된 정보로서 제(3)항 조건의 목적 을 위한 승인에 관한 정보를 그 지시에 지 정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다.

제4조

- (1) 이 조는 제16조제(2)항제(e)호에 언급 된 활동을 승인하는 허가에 적용된다.
- (2)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허가 에 명시된 구내에 저장된 모든 해부학 시료 가 그 시료를 보유하도록 지정된 개인이 서 면으로 승인한 사람의 소유를 위하여서만 구내의 저장에서 반출되는 것이다.

(3) 제(2)항의 조건은 적정한 처분을 목적 으로 저장된 시료를 반출하는 경우 적용되 지 아니한다.

- (4)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shall give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2) only if he is satisfied—
- (a) that the person to whom authority is given is a suitable person to have the specimen in his possession, and
- (b) that that person intends to use the specimen only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 (5)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any authority given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2) shall specify—
- (a) the person to whom the authority is given,
- (b) the specimen to which the authority relates,
- (c) the purpose for which the specimen may be used, and
- (d) the duration of the authority.
- (6)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shall give such notice of any authoris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2)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 (7) It shall be a condition of a licence to

- (4)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정된 개인이 다음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제(2)항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a)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시료를 보유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다.
- (b) 해당인이 교육, 훈련 또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시료를 사용하려 한다.
- (5)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제 (2)항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부여되는 권 한에 다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 (a)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 (b) 권한과 관련된 시료
- (c) 시료가 사용되는 목적
- (d) 권한의 기간
- (6)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정된 개인이 지시에 명시될 수 있는 제(2)항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승인을 통지하는 것이다.
- (7) 이 조가 적용되는 허가의 조건은 지시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that such information about authoris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2) as may be specified in directions shall be recorded in such form as may be so specified.

5 Power to impose conditions

The Authority may grant a licence subject to such further conditions as it thinks fit.

6 Pre-conditions to grant of licence

- (1) The Authority may not grant a licence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unles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 (2)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must—
- (a) be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or
- (b) consent to the application for the licence.
- (3) The Authority must be satisfied that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 (a) is a suitable person to supervise the activity to be authorised by the licence, and
- (b) will perform the duty under section 18.
- (4) Where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is not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the Authority must be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a suitable person to be the

에 지정된 정보로서 제(2)항 조건의 목적을 위한 승인에 관한 정보를 그 지시에 지정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다.

제5조(조건 부과 권한)

당국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추가 조건을 붙여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부여를 위한 사전조건)

- (1) 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허가를 부여할 수 없 다.
- (2)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은 다음과 같아 야 한다.
- (a) 허가 신청인이다.
- (b)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
- (3)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은 다음과 같이 당국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허가로 승인될 활동을 감독하기에 적합 한 사람이다.
- (b)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
- (4) 허가 신청인이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 이 아닌 경우 신청인은 허가 보유자가 되기 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국에 충족시

holder of the licence.

- (5) The Authority must be satisfied that the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the licence is to be granted are suitable for the activity to be authorised by the licence.
- (6) A copy of the conditions to be imposed by the licence must have been shown to, and acknowledged in writing by-
- (a)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and
- (b) where different,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 (7) In this paragraph, references to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are to the individual whom the application proposes the licence designate as the person under whose supervision the activity to be authorised by the licence is to be carried on.

7 Power to revoke licence

- (1) The Authority may revoke a licence on application by—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 (b) the designated individual.
- (2) The Authority may revoke a licence otherwise than on an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1) if—
- (a) it is satisfied that any information given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for the licence was in any material respect

켜야 한다.

- (5) 당국은 허가가 부여될 구내가 허가로 승인되는 활동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야 한다.
- (6) 허가에 의하여 부과될 조건의 사본을 다음의 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 (a) 허가 신청인
- (b) 다른 경우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
- (7) 이 조에서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이란 허가로 승인되는 활동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서 허가 신청서에 그 지정이 제안된 사람을 말하다.

제7조(허가 취소 권한)

- (1)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신청에 따 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a) 허가 보유자
- (b) 지정된 개인
- (2) 당국은 다음을 확신하는 경우 제(1)항 의 신청과 별개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a) 허가 신청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정 보가 중요한 측면에서 허위이거나 오해를

false or misleading,

- (b) it is satisfied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has failed to discharge, or is unable because of incapacity to discharge, the duty under section 18,
- (c) it ceases to be satisfied th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are suitable for the licensed activity,
- (d) it ceases to be satisfied that the person to whom the licence is granted is a suitable person to be the holder of the licence,
- (e) it ceases to be satisfied that the designated individual is a suitable person to supervise the licensed activity,
- (f) the designated individual dies, ...
- (g) it is satisfied that there has been any other material change of circumstances since the licence was granted or
- (h) it is not satisfied that any third country premises are suitable for carrying out activities in a manner which secures that tissues or cells imported from a third country by an importing licence holder meet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e 2007 Regulations.
- (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2)(h), "importing licence holder", "third country" and "third country premises" have

유발한다

- (b) 지정된 개인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능력으로 인하여 이 행할 수 없다.
- (c) 허가에 지정된 구내가 더 이상 허가된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d) 허가가 부여된 사람이 더 이상 허가 보유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 (e) 지정된 개인이 더 이상 허가된 활동을 감독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 (f) 지정된 개인이 사망한다.
- (g) 허가가 부여된 이후 상황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 (h) 모든 제3국의 구내가 수입 허가 보유 자가 제3국에서 수입하는 조직이나 세포가 2007 규정에 명시된 것과 동등한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 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 다.
- (3) 제(2)항제(h)호의 목적상, "허가 보유 자의 수입", "제3국" 및 "제3국 구내"란 2007년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

the same meaning as in the 2007 Regulations.

8 Power to vary licence

- (1) The Authority may on application by the holder of a licence vary the licence so as to substitute another individual for the designated individual if—
- (a) the application is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individual, and
- (b) the authority is satisfied that the other individual is a suitable person to supervise the licensed activity.
- (2) The Authority may vary a licence on application by—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 (b) the designated individual.
- (3) The Authority may vary a licence without an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2) if it has power to revoke the licence under paragraph 7(2).
- (4) The power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do not extend to making the kind of varia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 (1).
- (5) The Authority may vary a licence without an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2) by—
- (a) removing or varying a condition of the

다.

제8조(허가 변경 권한)

- (1) 당국은 허가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된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 대체하도록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 (a) 신청은 그 다른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다.
- (b) 그 다른 개인이 허가된 활동을 감독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국에 충족시킨다.
- (2) 당국은 다음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 (a) 허가 보유자
- (b) 지정된 개인
- (3) 당국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도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은 제(1)항에 언급된 변경의 실행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 (5) 당국은 신청 없이도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a) 허가의 조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다.

licence, or

- (b) adding a condition to the licence.
- (6) The powers conferred by this paragraph do not extend to the conditions required by paragraphs 2(4), 3 and 4.

9 Power to suspend licence

- (1) Where the Authority—
- (a)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voking a licence, and
- (b) is of the opinion that the licence should immediately be suspended,

it may by notice suspend the licence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 (2) The Authority may continue suspension under sub-paragraph (1) by giving a further notice under that sub-paragraph.
- (3) Notice under sub-paragraph (1) shall be given to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where the designated individual has died or appears to the Authority to be unable because of incapacity to discharge the duty under section 18—
- (a) to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 (b) to some other person to whom the licence applies.

- (b) 허가에 조건을 붙인다.
- (6)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은 제2조제(4) 항, 제3조 및 제4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허가 정지 권한)

- (1) 당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다.
- (a)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 (b) 허가를 즉시 정지한다는 의견이다.

통지서에 명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를 정지시킨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2) 당국은 제(1)항에 따라 추가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정지를 계속 시행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정된 개인에게 송달하며 지정된 개인이 사망했거나 제 1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송달한다.
- (a) 허가 보유자
- (b) 허가가 적용되는 다른 사람

- (4) Subject to sub-paragraph (5), a licence shall be of no effect while a notice under sub-paragraph (1) is in force.
- (5) An application may be made under paragraph 7(1) or 8(1) or (2)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 notice under sub-paragraph (1) is in force.

10 Procedure in relation to licensing decisions

- (1) Before making a decision—
- (a) to refuse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revocation or variation of a licence, or
- (b) to grant an application for a licence subject to a condition under paragraph 5,
- the Authority shall give the applicant notice of the proposed decision and of the reasons for it.
- (2) Before making a decision under paragraph 7(2) or 8(3) or (5),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proposed decision and of the reasons for it to—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and
- (b) where different, the designated individual.
- (3) A person to whom notice under subparagraph (1) or (2) is given has the right to require the Authority to give him an

- (4) 제(5)항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효력이 없다.
- (5) 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유효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허가결정과 관련된 절차)

- (1)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국 은 제안된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통지한다.
- (a) 허가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신청을 거절한다.
- (b) 제5항에 따른 조건으로 신청에 허가를 부여한다.

- (2)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국은 제안된 결정과 그 이유를 다음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 (a) 허가 보유자
- (b) 다른 경우 지정된 개인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사람은 제안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of one of the following kinds about the proposed decision, namely—

- (a) oral representations by him,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 (b) written representations by him.
- (4) The right under sub-paragraph (3) is exercisable by giving the Authority notice of exercise of the right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28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ce under sub-paragraph (1) or (2) was given.
- (5) The Authority may by regulations make such additional provision about procedure in relation to the carrying—out of functions under this Schedule as it thinks fit.
- 11 Notification of licensing decisions
- (1)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grant a licence,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 (a) the applicant, and
- (b) the person who is to be the designated individual.
- (2)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revoke a licence,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and

을 당국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a) 해당인이나 해당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사람의 구두 표현
- (b) 해당인의 의견서
- (4) 제(3)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8일이 경과하기 전에 당국에 권리 행사 통지서를 송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5) 당국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 부칙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결정 통지)

- (1) 허가결정의 경우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 (a) 신청인
- (b) 지정된 개인이 될 사람
- (2) 허가취소결정의 경우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 (a) 허가 보유자

- (b) the designated individual.
- (3)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vary a licence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8(1),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and
- (b) the person who is to be the designated individual.
- (4) In the case of any other decision to vary a licence,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 (a) the holder of the licence, and
- (b) the designated individual.
- (5)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refuse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revocation or variation of a licence,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the applicant.
- (6) Subject to sub-paragraph (7), a notice under sub-paragraph (2), (4) or (5)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 (7) In the case of a notice under subparagraph (2) or (4), the notice is not required to include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if the decision is made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7(1) or 8(2).
- 12 Permission for the purposes of the licence condition required by paragraph

- (b) 지정된 개인
- (3) 제8항(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한 허 가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국은 다음 에 대하여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 (a) 허가 보유자
- (b) 지정된 개인이 될 사람
- (4) 그 밖의 허가변경결정의 경우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 (a) 허가 보유자
- (b) 지정된 개인
- (5) 허가의 부여, 취소 및 변경에 대한 신 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국은 신청 인에게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 (6) 제(7)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에는 결정 이유에 대 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경 우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 른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제12조(제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허가조 건의 목적을 위한 허가)

3(2)

-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 licence authorising the storage of anatomical specimens.
- (2) The reference to the Authority's permission in the condition of the licence required by paragraph 3(2) ("the authorisation condition") is to—
- (a) permission granted by the Authority on an application made, in conjunction with the application for the licence, by—
- (i)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or
- (ii) the person who,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6, is the proposed designated individual, or
- (b) permission granted by the Authority on application by—
- (i)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 (ii) the designated individual.
- (3) The Authority may grant permission to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s of the authorisation condition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individual is a suitable person to give authorisation under that condition.
- (4) The Authority may revoke permission granted to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s of the authorisation condition—
- (a) on application by the individual, the

- (1) 이 조는 해부학 시료의 저장을 승인하는 허가에 적용된다.
- (2) 제3조제(2)호에서 요구하는 허가의 조 건에 대한 당국의 허가("승인조건")는 다음 을 말한다.
- (a) 허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사람과 공 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라 당국이 부여하는 허가
- (i) 허가 신청인
- (ii) 제6항에서 의미하는 추천받은 지정된 개인인 사람
- (b) 다음과 같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국 이 부여한 허가
- (i) 허가 보유자
- (ii) 지정된 개인
- (3) 당국은 개인이 그 조건 아래 승인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족시 키는 경우에만 승인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개인에게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4) 당국은 승인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개인에게 부여된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 (a) 해당인, 지정된 개인 또는 허가 보유자

designated individual or the holder of the licence, or

- (b) if it ceases to be satisfied that the individual is a suitable person to give authorisation under that condition.
- (5) Before refusing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r revocation of permission, the Authority shall give the applicant notice of the proposed refusal and of the reasons for it.
- (6) Before revoking permission under sub-paragraph (4)(b),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proposed revocation and of the reasons for it—
- (a) to the individual concerned, and
- (b) to the designated individual and, where different, the holder of the licence.
- (7) Paragraph 10(3) and (4) shall apply in relation to notice under sub-paragraph (5) or (6) as to notice under paragraph 10(1).
- (8)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refuse an application for the grant or revocation of permission,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to the applicant.
- (9)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grant or revoke permission, the Authority shall give notice of the decision—
- (a) to the individual concerned, and
- (b) to the designated individual and, where

가 신청한다.

- (b) 그 개인이 같은 조건으로 승인을 부여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상 충 족시키지 아니한다.
- (5)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신청을 거절하기 전에 당국은 제안된 거절 및 거절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6) 제(4)항제(b)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당국은 제안된 취소와 그 이유를 다음에 대하여 통지한다.
- (a) 해당 개인
- (b) 지정된 개인 및 다른 경우 허가 보유 자
- (7) 제10조(3)항과 제(4)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이나 제(6)항에 따른통지에 적용된다.
- (8)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신청을 거절하기 로 결정한 경우 당국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 을 알려야 한다.
- (9)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그 결정을 알려 야 한다.
- (a) 해당 개인
- (b) 지정된 개인 및 다른 경우 허가 보유

different, the holder of the licence.

- (10) Notice under sub-paragraph (8), and notice under sub-paragraph (9) of revocation under sub-paragraph (4)(b),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or revocation.
- (11) Where the Authority—
- (a)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voking permission granted to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s of the authorisation condition, and
- (b) is of the opinion that the permission should immediately be suspended,

it may by notice suspend the permission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 (12) The Authority may continue suspension under sub-paragraph (11) by giving a further notice under that sub-paragraph.
- (13) Notice under sub-paragraph (11) shall be given to—
- (a) the individual concerned, and
- (b) the designated individual and, where different, the holder of the licence.

13 Applications under this Schedule

(1) The Authority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about applications under

자

- (10) 제(8)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제 (b)호에 따른 취소의 제(9)항에 따른 통지에는 거절 또는 취소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당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 다.
- (a) 승인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취소할 근거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 (b) 즉시 허가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이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 (12) 당국은 제(11)항에 따라 추가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 (13) 제(1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에 대하 여 송달한다.
- (a) 관련 개인
- (b) 지정된 개인 및 다른 경우 허가 보유 자

제13조(이 부칙에 따른 신청)

(1) 당국은 이 부칙, 2007년 규정 부칙 1 및 2012년 규정 부칙 1에 따른 신청에 관 this Schedule, Schedule 1 to the 2007
Regulations and Schedule 1 to the 2012
Regulations and may, in particular, make
provision about—

- (a) the form and content of such an application,
- (b)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with such an application, and
- (c) procedure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such an application.
- (2) An application under this Schedule shall be accompanied by such fee (if any) as the Authority may determine.

SCHEDULE 4 Section 45

SECTION 45: SUPPLEMENTARY

PART 1 QUALIFYING CONSENT

1 Introductory

This Part of this Schedule makes provi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qualifying consent" in section 45(1)(a)(i).

2 Qualifying consent

- (1) In relation to analysis of DNA manufactured by the body of a person who is alive, "qualifying consent" means his consent, except where sub-paragraph (2) applies.
- (2) Where—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a) 이러한 신청의 양식 및 내용
- (b) 이러한 신청과 함께 제공할 정보
- (c) 해당 신청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 (2) 이 부칙에 따른 신청에는 당국이 결정하는 수수료(있는 경우)가 부과된다.

부칙 4 제45조 관련 제45조 보충조항 제1부 적격 동의

제1조(서두)

이 부칙의 이 부는 제45조제(1)항제(a)호 (i)목의 "적격 동의"에 대한 해석을 규정한 다.

제2조(적격 동의)

- (1)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로 제조된 DNA의 분석과 관련하여 "적격 동의"란 해당인의 동의를 말한다. 다만,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다.

- (a) the person is a child,
- (b) neither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n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is in force, and
- (c) either he is not competent to deal with the issue of consent or, though he is competent to deal with that issue, he fails to do so,
- "qualifying consent" means the consent of a person who has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 (3) In relation to analysis of DNA manufactured by the body of a person who has died an adult, "qualifying consent" means—
- (a) if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w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he died, his consent;
- (b) if paragraph (a) does not apply, the consent of a person who stood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 (4) In relation to analysis of DNA manufactured by the body of a person who has died a child, "qualifying consent" means—
- (a) if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w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he died, his consent;

- (a) 해당인이 아동이다.
- (b) 동의하기로 한 결정이나 동의하지 않 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없다.
- (c) 해당인이 동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그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그 와 같이 하지 못한다.
- 이 경우 "적격 동의"란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말한다.
- (3) 성인 사망자의 신체로 제조된 DNA의 분석과 관련하여 "적격 동의"란 다음을 말 한다.
- (a) 동의하기로 결정했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인의 동의
- (b) 제(a)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인 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과 적격 관계이 던 사람의 동의
- (4) 사망한 아동의 신체로 제조된 DNA의 분석과 관련하여 "적격 동의"란 다음을 말 한다.
- (a) 동의하기로 결정했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인의 동의

- (b) if paragraph (a) does not apply—
- (i) the consent of a person who had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or
- (ii) where no person had parental responsibility for him immediately before he died, the consent of a person who stood in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him at that time.

3 Application to Scotland

- (1) In its application to Scotland, paragraph 2 has effect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 (2) In sub-paragraphs (2) and (4)(b)(i) and (ii), for parental responsibility for there is substituted "parental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
- (3) At the end there is inserted—
- "(5) In this paragraph—

adult means a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child mean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parental responsibilities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 of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c. 36)."

- (b) 제(a)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다.
- (i)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동의
- (ii) 해당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해당인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 우 그 당시 해당인과 적격 관계이던 사람의 동의

제3조(스코틀랜드에 대한 적용)

- (1) 스코틀랜드에 대한 적용 시,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된다.
- (2) 제(2)항과 제(4)항제(b)호(i)목 및 (ii)목 중, "부모의 책임"을 "와 관련된 부모의 책임"으로 대체한다.
- (3) 끝에 다음을 삽입한다.
- "(5) 이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성인은 16세에 도달한 특정인을 말한다.

아동은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특정인을 말한다.

부모의 책임은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법률 제36호) 제1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PART 2 USE FOR AN EXCEPTED PURPOSE

4 Introductory

This Part of this Schedule makes provi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n section 45(1)(a)(ii).

5 Purposes of general application

- (1)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 (a) the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of the person whose body manufactured the DNA;
- (b) purposes of functions of a coroner;
- (c) purposes of functions of a procurator fiscal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deaths;
- (d) the prevention or detection of crime;
- (e) the conduct of a prosecution;
- (f)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 (g) implementing an order or direction of a court or tribunal, including one outside the United Kingdom.
-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1)(d), detecting crime shall be taken to include—
- (a) establishing by whom, for what

제2부 예외 목적의 사용

제4조(서두)

이 부칙의 이 부는 제45조제(1)항제(a)호 (ii)목의 "예외 목적의 사용"에 대한 해석을 규정한다.

제5조(일반적 적용 목적)

-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 목적의 사 용에 해당한다.
- (a) 그 신체로 DNA를 제조한 사람의 의학 적 진단 또는 치료
- (b) 검시관의 직무 목적
- (c) 사망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 검찰관의 직무상 목적
- (d) 범죄의 예방 또는 탐지
- (e) 기소 수행
- (f) 국가안보의 목적
- (g) 법원 또는 재판소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는 것. 이에는 영국 역외의 명령이나 지시가 포함된다.
- (2) 제(1)항제(d)호의 목적상, 범죄의 탐지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 목적, 수단 및

purpose, by what means and generally in what circumstances any crime was committed, and

(b)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by whom any crime was committed;

and the reference in sub-paragraph (1)(d) to the detection of crime includes any detection outside the United Kingdom of any crime or suspected crime.

- (3) In sub-paragraph (1)(e), the reference to a prosecution includes a prosecution brought in respect of a crime in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 (4) In this paragraph, a reference to a crime includes a reference to any conduct which—
- (a) constitutes one or more criminal offences (whether under the law of a part of the United Kingdom or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 (b) is, or corresponds to, conduct which, if it all took place in any one part of the United Kingdom, would constitute one or more criminal offences. or
- (c) constitutes one or more service offenc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rmed Forces Act 2006.
- (5) Sub-paragraph (1)(g) shall not be taken to confer any power to make orders

일반적인 상황의 확립

(b)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포

그리고 제(1)항제(d)호의 범죄 탐지에는 영국 역외에서의 범죄 또는 의심되는 범죄 의 탐지가 포함된다.

- (3) 제(1)항제(e)호에서, 기소는 영국 역외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기소를 포함한다.
- (4) 이 조에서 범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a) 하나 이상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영국의 한 지역 또는 영국 역외의 국가 또 는 영토의 법률에 따른 것인지는 상관없다)
- (b) 모든 것이 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면 하나 이상의 형사범죄를 구성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 (c) 「국군법(2006)」에서 의미하는 하나 이상의 복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5) 제(1)항제(g)호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

or give directions.

6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 (1)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the subject of an order under sub-paragraph (2).
-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specify circumstances in which the High Court or the Court of Session may order that this paragraph apply to bodily material.

7 Purposes relating to existing holdings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an existing holding—

- (a) clinical audit;
- (b) determining the cause of death;
- (c) education or training relating to human health;
- (d) establishing after a person's death the efficacy of any drug or other treatment administered to him;
- (e)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지 아니한다.

제6조(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의 목적)

- (1)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신체 유래 물질이 제(2)항에 따른 명 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예외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 (2) 장관은 규정으로 고등법원 또는 스코 틀랜드 민사최고법원이 이 조를 신체 유래 물질에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한다.

제7조(기존 보유물과 관련된 목적)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하여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신체 유래 물질이다음과 같은 기존 보유물인 경우 예외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 (a) 진료평가
- (b) 사망 원인의 결정
- (c)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
- (d) 사망 후 해당인에게 투여된 약물 등 처치의 유효성 확립
- (e) 다른 사람(미래의 사람을 포함한다)과

information about a living or deceased person which may be relevant to any 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 (f) performance assessment;
- (g) public health monitoring;
- (h) quality assurance;
- (i) research in connection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 (j) transplantation.

8 Purposes relating to material from body of a living person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a) clinical audit;
- (b) education or training relating to human health;
- (c) performance assessment;
- (d) public health monitoring;
- (e) quality assurance.

9

(1)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se body manufactured the DNA is use 관련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학적 정보 획득

- (f) 근무평정
- (g) 공중보건 모니터링
- (h) 품질보증
- (i)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
- (j) 이식

제8조(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유래 물질과 관련된 목적)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하여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신체 유래 물질이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경우 예외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 (a) 진료평가
- (b)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
- (c) 근무평정
- (d) 공중보건 모니터링
- (e) 품질보증

제9조

(1) DNA를 제조한 사람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학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예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for an excepted purpose if-

- (a)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the subject of a direction under sub—paragraph (2) or (3) or an order under sub—paragraph (4) or (5), and
- (b) the information may be relevant to the person for whose benefit the direction is given or order is made.
- (2) If the Authority is satisfied—
- (a) that bodily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not reasonably possible to trace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DNA in the material be analy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donor, and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or
- (iii) that the donor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t may direct that this paragraph apply to

다.

- (a) 관련 신체 유래 물질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다.
- (b) 정보는 지시나 명령의 대상인 사람에 게 이익이 될 수 있다.
- (2) 다음에 대하여 당국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신체 유래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 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신체의 소유자("기증자")를 추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아니하다.
- (c) 기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료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 내 DNA를 분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 부합한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기증자의 결정이 효력이 있다.
- (i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 능력이 부족하다.
- 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 조를 그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 (3) If the Authority is satisfied—
- (a) that bodily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DNA in the material be analy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reasona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get the donor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or
- (iii) that the donor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and
- (e) that the donor has been given notice of the application for the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this sub-paragraph,

it may direct that this paragraph apply to

물질에 적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3) 다음에 대하여 당국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신체 유래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사람("기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학적 정보를 획득하기위한 목적으로 DNA를 분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부합한다.
- (c)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있다.
- (i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 능력이 부족하다.
- (e) 기증자가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신청서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물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 (4) If the Court of Session is satisfied—
- (a) that bodily material has come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not reasonably possible to trace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DNA in the material be analy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donor, and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or
- (iii) that the donor is an incapable adult within the meaning of the Adults with Incapacity (Scotland) Act 2000 (asp 4),

it may order that this paragraph apply to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 (5) If the Court of Session is satisfied—
- (a) that bodily material has come from the

질에 이 조를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4) 다음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민사최고법 원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신체 유래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신체의 소유자("기증자")를 추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아니하다.
- (c) 기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료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 내 DNA를 분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 부합한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기증자의 결정이 효력이 있다.
- (iii) 기증자가 「스코틀랜드 무능력 성인법 (2000)」(스코틀랜드 의회제정법률 제4호)에서 의미하는 무능력 성인이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물질에 이 조를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5) 다음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민사최고법 원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신체 유래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at it is desirable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cluding a future person) that DNA in the material be analy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cientific or medic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the donor"),
- (c) that reasona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get the donor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 (d)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 (i) that the donor has died,
- (ii) that a decision of the donor to refuse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material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or
- (iii) that the donor is an incapable adult within the meaning of the Adults with Incapacity (Scotland) Act 2000, and
- (e) that the donor has been given notice of the application for the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this sub-paragraph,

it may order that this paragraph apply to the material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person.

10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onnection

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물질이 유래한 사람("기증자")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의학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DNA를 분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미래의 특정인을 포함한다)의 이익에 부합한다.
- (c)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d)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 (i) 기증자가 사망하였다.
- (ii) 기증자가 그 목적을 위한 물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있다.
- (iii) 기증자가 「스코틀랜드 무능력 성인법 (2000)」에서 의미하는 무능력 성인이다.
- (e) 기증자가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신청서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물질에 이 조를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인체의 장애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 으로 DNA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with disorders, or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 (a)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from the body of a living person,
- (b) the research is ethically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 (c) the analysis is to be carried out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 person carrying it out is not in possession, and not likely to come into possession, of information from which the individual from whose body the material has come can be identified.

11 Purpose authorised under section 1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a purpose specified in paragraph 7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the use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for that purpose of the bodily material concerned is authorised by section 1(1) or (10)(c).

12 Purposes relating to DNA of adults who lack capacity to consent

- (1) Use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DNA for a purpose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2) is use for an excepted purpose if—
- (a) the DNA has been manufactured by the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목적의 사용에 해당 한다.

- (a) 관련 신체 유래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 (b) 그 연구가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윤리적으로 승인된다.
- (c) 분석은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물질이 유래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보유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조에 따라 숭인된 목적)

제7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DNA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잉글랜드 웨일스 또 는 북아일랜드에서 신체 유래 관련 물질이 제1조제(1)항 및 제(10)항(c)호에서 승인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예외 목적 의 사용에 해당한다.

제12조(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 의 DNA와 관련된 목적)

- (1) 다음과 같은 DNA의 분석 결과를 제 (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 (a) DNA가 다음과 같은 사람의 신체로 제

body of a person who-

- (i) has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nd, under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lacks capacity to consent to analysis of the DNA, or
- (ii) under the law of Scotland, is an adult with incapac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Adults with Incapacity (Scotland) Act 2000 (asp 4), and
- (b) neither a decision of his to consent to analysis of the DNA for that purpose, nor a decision of his not to consent to analysis of it for that purpose, is in force.
-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specify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urposes for which DNA may be analysed.

13 Power to amend paragraphs 5, 7 and 8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paragraph 5, 7 or 8 for the purpose of—

- (a) varying or omitting any of the purposes specified in that paragraph, or
- (b) adding to the purposes so specified.

SCHEDULE 5 Section 48 POWERS OF INSPECTION, ENTRY, SEARCH AND SEIZURE

1 Inspection of statutory records

조되었다.

- (i) 18세에 도달하였고 잉글랜드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DNA의 분석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 (ii)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무능력 성인법(2000)」(스코틀랜드 의회제 정법률 제4호)에서 의미하는 무능력 성인 이다.
- (b) 그 목적을 위하여 DNA 분석에 동의하기로 한 결정이나 그 목적을 위하여 DNA 분석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없다.
- (2) 장관은 규정을 통하여 DNA 분석 목적으로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5조, 제7조 및 제8조 개정 권한)

장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명령을 통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개정할 수 있다.

- (a) 같은 조에 명시된 목적 중 일부를 변경 하거나 삭제한다.
- (b) 명시된 목적에 추가한다.

부칙 5 제48조 관련 열람, 진입, 수 색 및 압수 권한

제1조(법정 기록의 열람)

- (1) A duly authorised person may require a person to produce for inspection any records which he is required to keep by, or by virtue of, this Act.
- (2) Where records which a person is so required to keep are stored in any electronic form, the power under subparagraph (1) includes power to require the records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 (a) in a visible and legible form, or
- (b) in a form from which they can readily be produced in a visible and legible form.
- (3) A duly authorised person may inspect and take copies of any records produced for inspection in pursuance of a requirement under this paragraph.

2 Entry and inspection of licensed premises

- (1) A duly authorised person may at any reasonable time enter and inspect any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licence is in force.
- (2) The power in sub-paragraph (1) is exercisable for purposes of the Authority's functions in relation to licences.

3 Entry and search in connection with suspected offence

(1) If a justice of the peace is satisfied on sworn information or, in Northern Ireland, on a complaint on oath that there are

- (1) 정식 수임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비치해야 하는 기록을, 열람 을 위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해당인이 저장해야 하는 기록이 전자 적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 제(1)항의 권한 에는 열람을 위하여 그 기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 (a) 눈에 띄고 읽기 쉬운 형태
- (b) 눈에 띄고 읽기 쉬운 형태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 (3) 정식 수임자는 이 조의 요건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생성된 모든 기록을 검사하 고 복사할 수 있다.

제2조(허가된 구내에 대한 진입 및 열람)

- (1) 정식 수임자는 합리적인 시간에 허가 가 적용되는 모든 영업장에 진입하여 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권한은 허가와 관련된 당국의 직무 목적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조(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진입 및 수색)

(1) 치안판사가 북아일랜드에서 다음을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맹세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에 관하여 선서한 정보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 (a) that an offence under Part 1 or 2 or under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is being, or has been, committed on any premises, and
- (b) that any of the conditions in subparagraph (2) is met in relation to the premises,

he may by signed warrant authorise a duly authorised person to enter the premises, if need be by force, and search them.

- (2) The conditions referred to are—
- (a) that entry to the premises has been, or is likely to be, refused and notice of the intention to apply for a warrant under this paragraph has been given to the occupier;
- (b) that the premises are unoccupied;
- (c) that the occupier is temporarily absent:
- (d) that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premises or the giving of notice of the intention to apply for a warrant under this paragraph would defeat the object of entry.
- (3) A warrant under this paragraph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31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it is issued.

4 Execution of warrants

(1) Entry and search under a warrant

- 를 확신하는 경우 아래와 같다.
- (a) 제1부나 제2부 또는 「웨일스 인간이 식법(2013)」에 따른 위반이 어느 구내에 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였다.
- (b) 제(2)항의 조건이 구내와 관련하여 총 족된다.
- 이 경우 치안판사는 서명한 영장을 통하여 정식 수임자가 구내에 진입하고 수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2) 언급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구내에 대한 진입이 거부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 이 조에 따른 영장을 신청하 려는 의도를 점유자에게 송달하였다.
- (b) 구내가 비어 있다.
- (c) 점유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다.
- (d) 구내 진입을 신청하거나 이 조에 따른 영장을 신청할 의도를 송달함으로써 진입에 대한 이의는 무효로 된다.
- (3) 이 조에 따른 영장은 발부된 날부터 31일 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영장 집행)

(1) 제3조에 따른 영장에 따른 진입 및 수

under paragraph 3 is unlawful if any of sub-paragraphs (2) to (4) and (6) is not complied with.

- (2) Entry and search shall be at a reasonable time unless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thinks that the purpose of the search may be frustrated on an entry at a reasonable time.
- (3) If the occupier of the premises to which the warrant relates is present when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eeks to enter them,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hall—
- (a) produce the warrant to the occupier, and
- (b) give him—
- (i) a copy of the warrant, and
- (ii) an appropriate statement.
- (4) If the occupier of the premises to which the warrant relates is not present when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eeks to enter them, but some other person is present who appears to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to be in charge of the premises,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hall—
- (a) produce the warrant to that other person,
- (b) give him—

색은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다.

- (2) 영장 집행인이 합리적인 시간에 진입 하였을 때 수색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 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입이나 수색은 합 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영장 집행인이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집행 대상인 구내의 점유자가 출석할 경우 영장 집행인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점유자에게 영장을 발부한다.
- (b) 해당인에게 다음을 제시한다.
- (i) 영장 사본
- (ii) 적절한 설명
- (4) 영장 집행인이 해당 구내에 진입하려할 때 그 대상인 구내의 소유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구내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영장 집행인 앞에 출석한 경우 영장 집행인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그 다른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한다.
- (b) 해당인에게 다음을 제시한다.

- (i) a copy of the warrant, and
- (ii) an appropriate statement, and
- (c) leave a copy of the warrant in a prominent place on the premises.
- (5) In sub-paragraphs (3)(b)(ii) and (4)(b)(ii), the references to an appropriate statement are to a statement in writ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owers of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to whom the statement is given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 (6) If the premises to which the warrant relates are unoccupied,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hall leave a copy of it in a prominent place on the premises.
- (7) Where the premises in relation to which a warrant under paragraph 3 is executed are unoccupied or the occupier is temporarily absent,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hall, when leaving the premises, leave them as effectively secured as he found them.

5 Seizure in the course of inspection or search

(1) A duly authorised person entering and inspecting premises under paragraph 2 may seize anything on the premises which h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may

- (i) 영장 사본
- (ii) 적절한 설명
- (c) 영장 사본을 구내의 눈에 띄는 장소에 둔다.
- (5) 제(3)항제(b)호(ii)목과 제(4)항제(b)호(ii)목에서 적절한 설명이란 영장 집행인의 권한과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명을 듣는 사람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를 말하다.

- (6) 영장과 관련된 구내가 비어 있는 경우 영장 집행인은 해당 사본을 구내의 눈에 띄 는 장소에 둔다.
- (7) 제3조에 따른 영장을 집행할 구내의 점유자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인은 구내를 떠날 때 자신이 보았 던 그대로 효과적으로 고정되어 있도록 둔 다.

제5조(열람 또는 수색 중의 압수)

(1) 제2항에 따라 구내에 진입하고 검사하는 정식 수임자는 허가의 부여, 취소, 변경 및 정지와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당국의 직무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be required for purposes of the Authority's functions relating to the grant, revocation, variation or suspension of licences.

- (2) A duly authorised person entering and searching premises under a warrant under paragraph 3 may seize anything on the premises which h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may be required for the purpose of being used in evidence in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Part 1 or 2 or under the Human Transplantation (Wales) Act 2013.
- (3) Where a person has power under subparagraph (1) or (2) to seize anything, he may take such steps as appear to be necessary for preserving the thing or preventing interference with it.
- (4) The power under sub-paragraph (1) or (2) includes power to retain anything seized in exercise of the power for so long as it may be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seized.
- (5) Where by virtue of sub-paragraph (1) or (2) a person seizes anything, he shall leave on the premises from which the thing was seized a statement giving particulars of what he has seized and stating that he has seized it.

6 Powers: supplementary

(1) Power under this Schedule to enter and inspect or search any premises includes power to take such other persons 경우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2) 제3항의 영장에 따라 구내에 진입하여 수색하는 정식 수임자는 「웨일스 인간이식 법(2013)」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제1부 또 는 제2부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에서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 을 압수할 수 있다.
- (3) 해당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물건을 보존하거나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 으로 보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에는 압수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 할 때 압수물을 임치할 수 있는 권한이 포 함된다.
- (5)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인이 무엇이든 압수하는 경우 해당인은 그 물건을 압수한 구내에 압수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신이 그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남긴다.

제6조(권한, 보충조항)

(1) 이 부칙에 따라 구내에 진입, 검사 또는 수색할 수 있는 권한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and equipment as the person exercising the power reasonably considers necessary.

- (2) Power under this Schedule to inspect or search any premises includes, in particular—
- (a) power to inspect any equipment found on the premises,
- (b) power to inspect and take copies of any records found on the premises, and
- (c) in the case of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licence is in force, power to observe the carrying—on on the premises of the licensed activity.
- (3) Any power under this Schedule to enter, inspect or search premises includes power to require any person to afford such facilities and assistance with respect to matters under that person's control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power of entry, inspection or search to be exercised.

7

- (1) A person's right to exercise a power under this Schedule is subject to his producing evidence of his entitlement to exercise it, if required.
- (2)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having exercised a power under this Schedule to inspect or search premises, the duly authorised person shall—
- (a) prepare a written report of the

판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장비를 동반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 (2) 이 부칙에 따라 건물을 검사하거나 수 색하는 권한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된다.
- (a) 구내에서 발견된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
- (b) 구내에서 발견된 기록의 사본을 검사 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
- (c) 허가가 적용되는 구내의 경우 허가된 활동의 수행을 구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권 한
- (3) 이 부칙에 따라 구내에 진입, 검사 또는 수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는 진입, 검사 또는 수색 권한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인이 통제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편의 및 지원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제7조

- (1) 이 부칙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대상이다.
- (2) 이 부칙에 따라 건물을 검사하거나 수 색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 후 합리적으 로 실행 가능한 즉시 정식 수임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열람이나 수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inspection or search, and

- (b) if requested to do so by the appropriate person, give him a copy of the report.
- (3) In sub-paragraph (2), the "appropriate person" means—
- (a) in relation to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licence is in force, the designated individual (as defined in section 41);
- (b) in relation to any other premises, the occupier.

8 Enforcement

-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 (a) he fails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under paragraph 1(1) or 6(3), or
- (b) he intentionally obstructs the exercise of any right under this Schedule.
- (2)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paragraph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9 Interpretation

In this Schedule, "duly authorised person", in the context of any provision, means a person authorised by the Authority to act for the purposes of that provision.

다.

- (b) 적절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
- (3) 제(2)항에서 "적절한 사람"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허가가 적용되는 구내와 관련하여, 지정된 개인(제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이다)
- (b) 다른 구내와 관련하여, 점유자

제8조(집행)

- (1) 다음의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 (a) 해당인이 제1조제(1)항 또는 제6조제 (3)항에 따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한다.
- (b) 해당인이 의도적으로 이 부칙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다.
- (2) 이 조에 따른 범죄의 유죄인 사람은 약식판결에서 표준 등급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조(해석)

이 부칙에서 "정식 수임자"란 어느 조항의 내용 중 당국이 해당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도록 승인한 특정인을 말한다.